

의정활동보고서

제210회 정례회(2006. 10. 10 ~ 10. 2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들녘엔 결실이 영글어 가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한가위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중추지절(仲秋之節)에 망망한 동해의 지킴이 「독도」에서 제210회 정례회 개최식 및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제정 제1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용대 행정부지사님, 김 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운열 울릉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호 태풍 “산산”이 우리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큰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동북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중·일·러 등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군국주의 망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지난 해 3월 16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 의원연맹과 일본국 시마네현 의원연맹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파기하였고, 동년 4월 22일에는 이 자리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갖는 등 독도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도발과 망언에 분개하여 동년 6월 9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의결하여 오늘 조례제정 제1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300만 도민은 물론 7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나아가 독도는 반드시 수호한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의정사상 최초로 현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뜻 깊은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8대 도의회 첫 정례회로 의정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도정질문,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먼저, 도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나 의문사항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알뜰히 검증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충실히 수립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면한 사항으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김천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펼쳐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와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우리 도가 새롭게 웅비하고, 경주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울릉군 관계관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3
1. 소 집	13
2. 회 기	13
3. 활 동	14
가. 본회의	14
나. 위원회	16
III. 의안 처리	21
1. 본회의	21
2. 위원회	22
IV. 민원 처리	24
1. 청 원	24
2. 진 정	24
가. 접 수	24
나. 처 리	25

V. 본회의 보고사항 26

1.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26

2. 조례 공포사항 27

3. 위원회 활동사항 28

VI. 기타 의정활동사항 29

VII. 5분 자유발언 36

VIII. 도 정 질 문 39

부 록

□ 조례안 109

1.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10
2.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112
3.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8
4.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1
5.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3
6.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8
7.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30

□ 결산안 138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9
2.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5

□ 결의안 222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23

□ 승인안 225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22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는 2006년 10월 10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10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13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0월 10일(화) 오전 10시에 독도에서 정례회 개회식 및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제정 제1주년 기념식 행사로 개회사(의장), 축사(행정부지사), 환영사(울릉군수), 독도의 달 조례 제정 1주년 즈음 결의문 낭독(운영위원장), 만세 3창(부의장)이 끝난 후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과 경상북도 독도거주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10월 13일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7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하였다.

10월 11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김수용, 윤영식, 채옥주, 남종식, 김만용 의원)을 청취했다.

10월 12일(목) 오전 10: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이재철, 장길화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0월 13(금)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숙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및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후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정회하였다. 회의를 속개하여 윤리특별 위원장에 이시하 의원, 간사에 이상용 의원을 의결하고 난후 경상북도 의회 제210회 정례회는 폐회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17호(2006년 9월 26일)

라. 집회일시 : 2006년 10월 10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10월 10일 ~ 10월 20일(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누계 10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09회 까지	40	4	5	7	5	5	5	5	4
210회	13	1	2	2	2	1	1	1	3
누 계	53	5	7	9	7	6	6	6	7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10. 10(화) 10:00(제1차) 독도(선착장)	- 제21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원안가결
2006. 10. 11(수) 11:00(제2차)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 도정에 관한 질문 ①김수용(영천, 기획경제), ②윤영식(예천, 행정보건복지) ③채옥주(비례, 교육환경), ④남종식(청송, 농수산) ⑤김만용(의성, 교육환경)	
2006. 10. 12.(목) 11:00(제3차)	- 도정에 관한 질문 ①이재철(상주, 통상문화), ②장길화(비례, 건설소방)	
2006. 10. 20(금) 11:00(제4차)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10. 20(금) 11:00(제4차)	3.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5.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6.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7.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8.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10.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11.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12.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사 선임보고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6(월) 15:00(제1차)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2.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3.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원안가결
	4. 200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5. 200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3(금) 11:00(제1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본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2.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10. 16(월) 14:00(제2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과학진흥본부 2.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3(금) 11:00(제1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독립경도대학 ○ 행정지원국 2.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원안가결 유 보
2006. 10. 16(월) 11:00(제2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2.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원안가결 유 보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3(금) 11:00(제1차)	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6. 10. 16(월) 11:00(제2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해양산업국 (관련사업소 포함)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6(월) 11:00 (제1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수산국 소관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개정조례안 심사 3.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업기술원 소관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통상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3(금) 11:00(제1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 투자통상본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6(월) 11:00(제1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 소방본부 소관 2.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0. 17(화) 11:30(제5차)	1. 200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06. 10. 18(수) 10:30(제6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행정지원국 소관 - 경도대학 - 보건복지여성국 - 공보관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 기획조정본부(새경북기획단 포함) - 경제과학진흥본부 -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2006. 10. 19(목) 10:30(제7차)	1.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해양산림국 - 의회사무처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 투자통상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 건설도시방재국 - 소방본부 □□ 토론·의결	원안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1 (29)	11 (29)	9 (24)	2 (5)				
조 례 안	소 계	7 (18)	7 (18)	5 (15)	2 (3)				
	의 회 제 안	2 (4)	2 (4)	2 (4)					
	도지사 제 출	4 (10)	4 (10)	3 (8)	1 (2)				
	교육감 제 출	1 (4)	1 (4)	(3)	1 (1)				
예산 · 결산		2 (4)	2 (4)	2 (2)	(2)				
동의 · 승인		1 (2)	1 (2)	1 (2)					
건 의 안		(2)	(2)	(2)					
결 의 안		1 (2)	1 (2)	1 (2)					
기 타 안		(1)	(1)	(1)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9 (28)	11 (29)	7 (18)	2 (4)	1 (2)	(2)	1 (2)	(1)			2 (3)
의 회 운 영	(4)	3 (7)	1 (3)		1 (1)		1 (2)	(1)			
기 획 경 제	2 (3)	2 (3)	2 (3)								
행 정 보건복지	2 (6)	(4)	(4)								2 (2)
교 육 환 경	1 (6)	2 (6)	2 (5)		(1)						(1)
농수산	1 (2)	1 (2)	1 (1)			(1)					
통 상 문 화	(1)	(1)				(1)					
건 설 소 방	1 (2)	1 (2)	1 (2)								
특 별	2 (4)	2 (4)		2 (4)							
본회의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3건>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06. 8. 4 교육환경위원회)
- ②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6. 10. 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③ 2006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6. 10. 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9)		(1)	(1)	1 (2)	1 (1)		2 (2)	1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행 정 보건복지	(1)		(1)							
교 육 환 경	2 (2)					1 (1)		1 (1)		
농수산	1 (2)								1 (2)	
통 상 문 화	1 (2)			(1)				1 (1)		
건 설 소 방	1 (2)				1 (2)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9)	5 (9)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1)	(1)				
교육환경	2 (2)	2 (2)				
농 수 산	1 (2)	1 (2)				
통상문화	1 (2)	1 (2)				
건설소방	1 (2)	1 (2)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7. 3)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 (2006. 7. 11)
경상북도교육감 (2006. 7. 4)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환경 (2006. 7. 11)
경상북도교육감 (2006. 9. 28)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기획경제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기획경제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2006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보건복지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 수 산 (2006. 10. 2)
경상북도지사 (2006. 9. 29)	경상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소방 (2006. 10. 2)
교육환경위원회 (2006. 10. 9)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회 의 (2006. 10. 10)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	2006. 9. 14 (제2932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	2006. 9. 14 (제2933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9. 25 (제2934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	2006. 9. 25 (제2935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9. 25 (제2936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2006. 9. 25 (제2937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2006. 9. 25 (제2938호)
2006.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9. 25 (제2939호)
2006. 9. 8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006. 9. 25 (제2940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 원 회	2006. 9. 25 ~ 9. 26	대전광역시 · 전라북도의회	· 의회시설 견학 및 특수시책 벤치마킹 등
교육환경 위 원 회	2006. 9. 14 ~ 9. 15	위원회 회의실 및 경산, 경주 (도내 골프장)	· 고교평준화 등에 따른 간담회 및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잔류량 검사
농 수 산 위 원 회	2006. 9. 1 13:30	군위 강변둔치	· 제3회 도 여성농업인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농 수 산 위 원 회	2006. 9. 8 11:00	영천 3사관학교	· 농촌여성지도자 리더십배양 수련대회 참석(관계자 격려)
농 수 산 위 원 회	2006. 9. 14 14:00	경산 세종수련원	· 농촌지도자 도시·군 임원 및 읍·면회장 연찬회 참석(관계자 격려)
통상문화 위 원 회	2006. 9. 10 ~ 9. 16	중국 (북경, 사천성)	· 문화관광홍보설명회 개최 및 의향서 체결, 기관단체 방문 등
통상문화 위 원 회	2006. 9. 27 ~ 9. 28	김천체육관	· 전국체전 시설 및 대회운영계획 점검 등
건설소방 위 원 회	2006. 9. 8 11:00	안동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건설협회 관계자 및 도의회 자문교수 들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논의 등

VI. 기타 의정활동사항

○ 대구·경북지역 혁신대전 개막식

- 일 시 : 2006. 8. 29(화) 10:30
- 장 소 : 안동 시민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박진현 기획
경제위원회 간사, 기획경제위원(이상용, 정경구)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200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일 시 : 2006. 8. 30(수) 11:00
- 장 소 : 포항공대 대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사회

- 일 시 : 2006. 8. 31(목) 14: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3회 도 여성농업인대회

- 일 시 : 2006. 9. 1(금) 13:30
- 장 소 : 군위 강변둔치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의 농수산위원 8명

○ 한덕수 전 부총리 등 한미FTA 체결지원위원단 접견

- 일 시 : 2006. 9. 7(목) 14: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한국은행 포항본부 · 구미지점 폐쇄저지 항의방문

- 일 시 : 2006. 9. 8(금) 10:00
- 장 소 : 한국은행 본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농촌여성지도자 리더십배양 수련대회

- 일 시 : 2006. 9. 8(금) 11:00
- 장 소 : 영천 3사관학교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의 농수산위원 8명

○ 비회기중 의원당직 윤번제 운영

- 일 시 : 2006. 9. 11 ~ 9. 29
- 장 소 : 위원회사무실
- 참 석 : 상임위원장, 간사

○ 제15회 전국무용제 개막식

- 일 시 : 2006. 9. 11(월) 19:00
- 장 소 : 포항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채옥주 의원

○ 전국 장애인체전 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6. 9. 12(화) 11: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농업부문 대구·경북 경제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일 시 : 2006. 9. 12(화) 11:00
- 장 소 : 대구EXCO
- 참 석 : 이종원 농수산위원회 간사, 농수산위원(김동인, 김영만)

○ 제22회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배 전국 초중학교
체조대회

- 일 시 : 2006. 9. 13(수) 09:30
- 장 소 : 포항 포철중학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 간담회

- 일 시 : 2006. 9. 13(수) 16:00
- 장 소 : 상주시청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의외 북부지역 11개 시·군
도의원 21명

○ 수도권 규제완화철회 간담회

- 일 시 : 2006. 9. 14(목) 14:00
- 장 소 : 포항 영일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 일 시 : 2006. 9. 14(목) 15:00
- 장 소 : 포항 영일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 일 시 : 2006. 9. 15(금) 18:00
- 장 소 : 문경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체전 D-30 준비상황 보고회

- 일 시 : 2006. 9. 18(월) 14: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6. 9. 20(수)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참 석 :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위문

- 일 시 : 2006. 9. 21 ~ 9. 28
- 장 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 참 석 : 도의원

○ 제8회 도 장애인체육대회

- 일 시 : 2006. 9. 22(금) 11:00
- 장 소 : 안동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낙동강수계 관리담당공무원 연찬회 특강

- 일 시 : 2006. 9. 25(월) 15:00
- 장 소 :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한국은행 포항본부·구미지점 존치를 위한 한국
은행 총재방문

- 일 시 : 2006. 9. 26(화) 11:00
- 장 소 : 한국은행 본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백천봉·채옥주 의원

○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 일 시 : 2006. 9. 27(수) 14:3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6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06. 9. 28(목) 10:30
- 장 소 : 대구EXCO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이상용 의원

○ 경상북도 새마을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6. 9. 28(목) 14:2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6 경북과학축전 개최식

- 일 시 : 2006. 9. 29(금) 15: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독도성화채화

- 일 시 : 2006. 10. 2(월) 10:00
- 장 소 : 독도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I. 5분 자유발언

□ 2006년 10월 20(금) 제210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金淑香 議員(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상주와 고령 등에서는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망치로 벽을 뚫는 무자비한 폭력과 파괴행위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습니다.

행자부는 8월 3일 불법공무원단체전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시행했고 경상북도는 8월 8일 각 시·군·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UN산하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국제기준에 맞게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재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정 권고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면서 마녀사냥식으로 탄압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국가와 지방권력이 자행한 불법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과 이를 지시

하는 공문,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부처장의 담화문 등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행정자치부장관 또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세워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가 지역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여 무리하게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반지방분권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만의 조합원을 두고 이미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두고 행자부 지침이니까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행태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노사간 극렬한 대립과 충돌이 재연되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상북도지사께서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결코 자신들만의 안위나 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정말 올바른 것발을 들고 우리들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치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방행정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손을 맞잡는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지방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 첫 출발점이 바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더 이상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지침의 해석으로 공무원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I. 도정 질문

□ 2006년 10월 11(수) 제210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金守瑢 議員(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제210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3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하 관계 실·국장과,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는 민선 4기 도정목표를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정하고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활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경상북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를 경영함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선진 자본과 첨단기술의 유치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유치에 급급하여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미4공단을 비롯한 몇몇의 경우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입주조건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의 차별이 그러한 예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의 혜택도 지방기업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등 비교적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는 최상의 대우와 혜택을 주지만 그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제발 좀 묵고 살자’라는 슬로건처럼 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향상시키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더 전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지사의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과 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한 가정과 기업에서도 향후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상북도의 행정조직개편을 경제와 투자, 통상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켜 의욕적으로 출범을 하겠다고 보니다마는 향후 경북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도지사의 경상북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신과 행정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세계 평화를 위협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핵공포가 엄습(掩襲)하여 온 국민이 배신감과 분노심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뜰이나 불안한 경제가 초대형 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고 소비, 투자, 수출시장이 핵편치에 허덕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향후 그 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로 경제 핵우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동해 경제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경북도와 강원도, 울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29조원을 넘는다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제시하는 환동해축의 개발방향에 부응하는 환동해권 환경공생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동해안을 공동비전으로 설정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기반 강화, 산업의 공동연계 발전방안과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 시·도는 국무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동해안개발기획단의 조기설치를 위해 조만간 동해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결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된 것과는 달리 우리 경북이 처한 동해안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해안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동해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전남이 주축이 되는 서남해안 개발은 어떻습니까? 해남, 무안, 목포, 전남도의 서남해안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S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9월 재정경제부가 전담부처로 지정되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직접 나서서 해수부, 농림부 등 주요부처에 서남해안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그동안 청와대 내에 TFT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전문가와 지역경제인,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단(團)이나 처(處)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S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늦어도 내년 2007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바 우리 도는 이러한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정책으로 나가야 할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지역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뿌리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05년도 시도별 과학기술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예산 3조 4,376억원 중에서 주요 과학기술 사업 예산이 531억, 주요 연구기관 지원 예산이 129억, 과학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1.92%인 660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과 중앙정부의 투자지표를 보면 과학기술에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것이 드러납니다. 실제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중앙정부의 연구개발투자액은 총 5조 6,436억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의 16개 시·도간 투자비

중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1조 9,780억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조 2,454억으로 22%, 경기도 9,621억으로 17%가 투자되었으며 이와 같은 투자비중은 2000년도부터 변동 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경북은 1,311억으로 2.3%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경북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보다 과감한 과학기술예산의 편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2007년 예산편성 시 과학기술예산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문제는 1981년 대구광역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후부터 도청의 경북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높았지만 극심한 지역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도청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도청이전은 현 김관용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도청이전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도청이전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경북도내 일부 시군들이 도청이전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도청이전은 단순히 지역개발 차원이 아닌 행정 및 민원수요에 대한 효율화와 능률화, 지역경제역량의 결집,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통해 도민이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23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구, 산업, 문화, 교통망 등 영남의 중심지역, 도민의 중심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또 다른 도정의 정책과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도청이전을 통한 낙후된 지역 발전은 이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시를 제외하면 경북도내에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청이전 대상지는 도민화합을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북도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여 도청유치를 위한 지나친 지역간의 경쟁이 도청후보지 선정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지역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도정에 전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가 선정될 경우 대다수 도민이 이를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고, 이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때에 도청이전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여파가 두려워 암묵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언젠가는 도청이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곳 3백만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겠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이전에 따른 그 기반조성 비용이 약 2조 내지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며, 이전예상지역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방안에도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태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현재 55만명, 가해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경찰청 분석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오히려 쉬쉬하거나 은폐해 오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혹은 조금만 참으면 졸업하면 된다는 등의 답변만 듣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해 폭력으로 인해 경북에서 가해학생을 퇴학시킨 사례는 10건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봉사 132명, 전학 4명, 출석정지 3명 등으로 나타나지만,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그 짧은 기간에도 자진신고 23건, 피해신고 70건 등 총 93건이 접수처리 되었다고 경북경찰청이 밝힌 바 있어 얼마나 학교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이유로 전학 및 출석정지 당한 학생은 교육청이 내놓은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교육청은 23개 시군 교육청에 총 33명의 전문상담순회 교사를 두고 있지만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학교수가 50여개에 이르러 실제적인 상담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관련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또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에 교육감은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추방운동을 도내 전 학교에 대대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정책과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尹榮植 議員(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300만 도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산적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FTA를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농어촌 양극화 문제, 청소년 실업문제 등 여전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는 우리 경북의 주요현안 중의 현안으로 이미 경북의 중서부와 동남부, 그리고 북부권 간의 개별격차로 지역 균형의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도정질문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보다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오늘의 논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지방의 젖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실제 농업·공업용수, 식수원 등으로 활용되는 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철저한 유지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낙동강 인근 도시의 수해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 치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태풍과 집중호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처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경북 낙동강 상류지역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607ha였다가 2005년도에는 954.5ha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일부 지역에 반복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울진과 영양, 예천 등지에서 주택 11채가 파손되고 예천에는 271ha를 비롯해 무려 농작물 1,045ha가 침수되었으며 도로 5곳과 하천 7곳 수리시설 5곳 등 54곳의 공공시설이 손실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과는 국비부족 등의 핑계로 재해예방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계속되는 수해공사에도 침수위험성은 여전하며 더욱이 수해에 대비한 대형배수펌프장만 340여개에 이르는 등 단순히 제방 보수, 그리고 배수펌프로 퍼내는 식은 많은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지역인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등 11개소와 예천군 예천읍과 지보면, 개포면, 용궁면, 풍양면 등 11개소는 이미 2004년부터 치수벽 설치 등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꼼짝없이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액이 무려 1조 9,000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피해액의 160%가 많은 3조 653억원에 이르는데도 해마다 항구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있을 뿐 사후에 땀질식 처방만으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의 우선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재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공회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등 엄격하고도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와 배수개선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과다한 사업비임에도 사업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와 보조사업으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어 2개 사업 간에 원활하고도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연차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낙동강 상류지역인 예천군의 사업현황을 조사해 보니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는 총 6건으로 총사업비가 1,460억 6,400만원에 달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임에도 40%, 60% 정도의 진척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시행중인 사업장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마저 있으며 배수장의 경우에도 8건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향후 11개 지구에 더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694ha의 면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 주체가 달라 그 성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효율성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커다란 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도보완이 이루어져 예산 절감과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전국 제1의 농도입니다. 전국에서 경북의 농가 수는 21만 2,7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농업인구도 53만 7,000여명으로 전국 1위이며 경작 면적도 28만 9,000ha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생산량에서도 한우, 사과, 포도 등의 12개 품목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닭, 돼지, 대두 등과 같이 4위권 내의 농산물은 무려 2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실적과 달리 우리 경북농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며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즉 농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1.07ha로 전국에서 0.84ha의 경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으며 이 같은 규모는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1.19ha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경북 농업이 대부분 영세농업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경북의 농업소득은 1,300만원으로 제주에 이어 2위였지만 농외소득이 690만원으로 꼴찌를 기록, 농가소득도 전국 7개 도 가운데서 6위로 밀려나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미 FTA와 DDA 등 농산물의 개방은 경북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피해를 입을 것임을 너무나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입게 될 피해의 규모나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경북도가 전국 생산 비중 1위를 차지하는 한우, 사과, 포도 등 주요 품목이 미국의 주력 수출 농산품과 겹쳐 있어 당장 우리 경북농업의 경쟁력이 낮아 아예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현재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미 FAT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사관학교 설립과 운영, 경북

쌀 신유통체계 구축, 신경북 사과생산체계 구축 등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에 좋을지는 모르나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회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계와 장비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비싸게 구입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과 서비스 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도 많지 않고 또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 농기계 부품 교환이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콤파인, 바인더, 탈곡기 등 대부분의 농기계는 한차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꼭 필요한 농번기때 자주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고려한다면 농기계 임대가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지는 바 이에 대한 확대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보급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서비스센터, 서비반 판매업체 등이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지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수리 인력의 부족, 그리고 무상수리 혜택 범위가 좁은 등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농기계 수리 인력 양성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로에 확·포장, 경지정리 등 필수적인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경상북도내 농로 포장과 경지정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북의 농촌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며 수확한 농수산물이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은 우리 농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농산물이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활로가 품질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농산물 품질 경쟁력이 시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효율적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본의원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시·군마다 난립되어 있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판매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②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민들의 출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사는 시·군별로 독립 운영하기 것보다는 유사품목별로 몇 개의 시·군을 묶어 준 광역권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③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 확대설치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판장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원금을 더욱 늘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④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판 설치, 방송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물량규모와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도시와 각 기업들 그리고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 특화된 우수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현대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 대한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는 지난 2월부터 5억 6,000여만원을 들여 한국 후지스 등 3개 기업과 함께 2005년 5월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을 통하여 RFID 등 즉 농산물 인력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불법유통 근절은 물론 경북지역에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등을 가져 올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 농협 하나로 마트, 그리고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쇼핑 점 등 네 군데 리더기를 설치하였으나 상품성이 떨어져 유통매장에서 매출이 저조할 뿐 아니라 농산물 공급이 잘되지 않거나 홍보가 다소 부족하여 일부가 이미 운영이 정지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타지역의 기존 전략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의 시책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해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현대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통의 획기적인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다루어졌습시다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최근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도청과 도청 공무원들은 경상북도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지금 현재도 이곳 대구에 90% 이상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서 모든 생활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대구로 유입되는 등 결과적으로 경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청에서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은 300만 경북도민의 숙원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경북은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인구나 산업의 편중이 지나칠 만큼 왜곡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너무나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하여 악화일로를 거듭하여 경북북부의 지역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뜻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도청이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순위로 놓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청이전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전후 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상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종전과 같이 논의만 무성하던 우를 범하지 말고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추진을 통해 중점 공약사항인 도청이전을 임기내에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1998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0개 업종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다시 8개 업종 첨단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IMF 경제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이제 아예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단체장이 주장하는 대수도론과 맞물려 노골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방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금새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 역시 서서히 기억 속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수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해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의례히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답변이 되풀이되고 항구적인 예방조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총 156지구 533km에 5,4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내 상습수해지역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투자계획인지와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산 등 기타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상습수해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동일 지역에 또 다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내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건설도시국장) 고마웠고요. 하천개수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주체가 서로 달라서 효과가 적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하튼 시너지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농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도에서는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 과수산업경쟁력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는 절망감을 감안해 협상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으로 우리 도의 과수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은 물론, 특히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2005년까지 김천·상주에서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실적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또 임대료나 임대기간을 시군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군 주민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기계가 고가인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되는 바,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이전에 조속히 도 전 시군에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 현재 추진 중인 시책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농산물 유통환경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중심의 유통시설을 확대·건립하는 것은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TV 옥외광고탑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물 등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확대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RFID 시스템의 활용계획 및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게요.

도비 5억 3,000만원을 투자해 구축한 RFID 시스템이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중도에 운영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의 우려마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지 라는 기우마저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본의원 생각으로도 RFID 시스템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시스템으로 판단되므로 제도보완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의 획기적인 블루오션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경북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맛 좋고 안전하며 우수한 농산물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여 생산농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편리한 쇼핑과 택배산업의 발달, 인터넷 보안환경 개선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활용도 및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경북고향장터'의 운영실적과 향후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제약도 그렇고 앞서 지사께서 답변도 하셨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蔡沃珠 議員(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인재들을 새로이 선출하고 지역경제와 복지, 그리고 교육 등의 쇄신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민의 미래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단체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여성참여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판도 아니며 지역민생을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구현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스스로 그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개개인들을 조직화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

할을 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방자치는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 여성단체는 500여개이자 그 회원은 모두 35만명으로 경북도 여성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 참여할 잠재가능성이 높은 30세에서 60대 여성인구의 4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여성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여성단체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단체의 31.4%가 아직도 사무실이 없으며, 있어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있으며, 자체 사무실 소유 단체는 7%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취약한 재정은 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단체를 하나의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간과 행정이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활동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권신장, 그리고 사회진출의 확대를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현재 운용실정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대학입학지원 단독사업에만 7,000만원이 소요되어 다양한 여성발전부분을 도모하지 못하고 여성복지부분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200억원, 혹은 다른 시·도의 100억원 등에 비하여 경북의 30억원 목표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무나 떨어진 액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빈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의 산물에 대한 대책이 별도의 정책적인 예산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립취지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적극적인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확대는 지역의 활로를 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연구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설립은 되었으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발 연구기관에 비해 규모와 시설, 연구인력 면에서 여러 모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도와 달리 우리 경북도는 도 여성회관이 없어서 차별화된 교육 및 시군 여성회관과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그나마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시설 및 연구인력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강화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의 여성프라자, 전남의 여성프라자 등과 같이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여성종합센터로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여성회관과 여성정책개발원은 물론 여성단체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2005년 기준으로 1.17명으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역에서도 경기도, 전북과 같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의 인구는 1979년의 498만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1~2만명씩 줄어들어서 2004년에는 271만명까지 추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우리 도의 존속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여성이 직장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등의 사회적인 직장요인 외에도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자녀교육 및 양육비 증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이 복합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우리

경북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장려정책들이 단순히 장려금을 나누어 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출산도우미제의 경우는 지원대상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기관이나 인력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산모가 턱없이 적은 형편입니다. 출산도우미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실질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농촌지역 의료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88개군 중에서 무려 56개군이나 되며, 그 가운데 경북이 군위, 의성, 청송 등 모두 12개군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소아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서둘러 중소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시간지연은 물론이고 교통비와 진료비 부담에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에서만 작년에 군단위 지역의 3,700여명의 산모가 원정출산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정출산은 산모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출산하고 난 뒤에도 제대로 된 소아과가 없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무료진료가 이루어지는 보건소가 산

모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는 등 낮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산모들은 그 불만이 높아져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주 1~2회 정도라도 진료시간을 늘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은 국내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할 만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내에는 900명이 결혼하여 이주해 왔고, 현재 총 2,417명이 경북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많은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생활고, 가족의 비인격적인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 역시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장애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경북도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배려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더불어 기초법률교육,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상호간 인격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근절하는 등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에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반감, 시대착오적인 순혈주의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도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학자녀가 금년에 480여 명이다가 내년에 1,000명에 이르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당면한 현실적인 교육부문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영어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영어교육을 위한 공약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약사항에 따라 구상된 영어마을 조성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교통과 주변 관광 자원 등 여건이 좋은 도내 1곳에 300억원 정도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으로 현재 대폭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새로이 수정된 영어마을 조성 계획마저도 전향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안산, 과주, 양평의 세 영어마을 건립에 무려 1,790억원이 들었고, 세 곳의 한해 운영비는 27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산 영어마을의 경우 50억 적자, 과주 영어마을은 총 850억원 투자에 연간 150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과연 경기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가 제대로 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영어마을 사업이 자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는 민간위탁 방식을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갈 경우 재정의 부담은 경감될지 몰라도 교육비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도 예상되는 바, 영어마을에 드는 조성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나 효과가 어려워 과연 영어학습 동기유발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영어마을의 체험에 따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이벤트식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영어학습 동기를 지속 시키기도 어려우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운용하게 된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차라리 영어마을의 건립비나 운영비를 보다 실제적인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교사 연수를 확대하거나 원어민 교사 채용에 쓰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원어민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원어민교사는 올 4월 현재 33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재직 중인 원어민 교사도 50%가 포항, 구미, 안동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질적 수준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북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북도립교향악단과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고 23개 시·군으로 흩어져 있어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도민의 문화적 욕구로 채워지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연주회를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는 유교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연주활동은 음악을 사랑하고 문화를 아끼는 모든 도민들에게 삭막한 생활에서의 여유로움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당되어 지금까지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오아시스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의 연주이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적당한 수준의 연주로 청중을 대하는 방식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교향악단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좀더 진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비추어지는 연주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도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연주회 일정 등을 알아보고자 해도 홈페이지 하나 없어 그 관련된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시정하여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통하여 음악 연주와 관련된 문화적 향수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 민선4기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단체가 매우 의존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의존성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의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대회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몇 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열악한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또 아울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에 보면 재정자립도 제고 등 자구적인 발전 노력을 통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정자립도 제고 등 자구적인 발전노력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산업이나 건설, 도시계획 등 이런 부분과 달라서 여성부분에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부분 정책개발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물론 향후 여성정책개발원이 기관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성부분에 동일하게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다른 시·도 여성관련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확대 및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경북의 모든 여성들이 지사께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 줄 알고 기대가 굉장히 큰 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축소개편하지 말고 자금도 더 투입하고 해서 명실공히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南宗植 議員(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210회 정례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기쁨이자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현실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300만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로 FTA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FTA, 영문도
몰랐던 FTA가 한·칠레 FTA라는 명목으로, 특별히 농업 FTA 명목
으로 저희 농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그 주체인 농업인들은 알
지도 못 했고 대응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농업적인 인사들과 비
교우위원장들에 의해서 대안 없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
니까? 그 결과를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업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2, 3차 산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메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과연 2, 3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
습니까? 아니면 농업을 조금 희생시켜 2~3차 산업이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칠레 FTA를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한 한·미 FTA를 농민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주체자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농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반농업적인 자들과 비교우위론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협상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농업 FTA에 관해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FTA, 즉 대안 없는 자유무역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대안 없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미 FTA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농업도인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우리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을 조금은 살릴 수 있겠는지? 아니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쓰러질 것인지에 관해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TA는 농민이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그 FTA가 이루어진 이후의 대처방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의 대처방안들은 그 때 가서 논의하고 지금 현실은 절대로 한·미 FTA가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농민사관학교에 관한 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민사관학교를 자주국방을 이룬 기틀을 이루었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기틀을 떠올리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지사께서 이 농민사관학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워졌던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농업 후계인력이 부족한 농업현실 가운데 과연 후계인을 키워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30년, 40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새마을의 아름다운 구호가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좋은 구호였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을 통해서 “제발 좀 먹고 살자” 라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준 좋은 구호들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과연 도지사께서 우리들에게, 서민들에게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에게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 한 푼의 돈이라도 한 푼의 소득이라도 더 오르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바로 농업예산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고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농업예산이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배로 확충되어 우리 농업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농업은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 차제에 우리 농업이 회생될 수 있는 우리 농업이 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히 도지사께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경북도정에 우리 경북의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萬用 議員(교육환경위원회)

경북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며, 산부인과의 없는 군위군·청송군 가운데 있는 의성군 출신 김만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지난 5. 31 격전의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과 선택을 받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제발 좀 묵고 살자’는 경제도지사 김관용 후보에게 77%, 전국 최고의 지지로 3백만 도민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위협 속에 나라 안으로는 국민 지지도 10%를 조금 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IMF 10개를 묶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한·미 FTA 졸속 추진, 나라 밖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중국의 동북공정 등 국가생존이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독도의 달을 맞아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역사적 법률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평소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란 저서에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사는 3백만 도민이 뽑았고 지사의 공과 과는 다른 데로 돌릴 데가 없이 고스란히 도지사를 뽑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권한 집행을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기관은 절대 아니며, 55인의 의원은 거수기는 더욱 아닙니다. 경륜과 참신성, 전문성을 갖춘 3백만 도민이 선택한 의원임을 상기코자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못 살게 굴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묵자의 말씀대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승리하지 말고 의회와 함께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가 우리를 방문할 것임을 강조드리며, 경북도정과 경북 교육청 현안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북·대구 경제통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분위기 조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업계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시민단체 등 지역의 모든 기관 단체와 시·도민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능력이나 지혜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행정력으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 3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나 상의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제통합이 경북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와 낙후된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특히 11개 시군이 참여한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건의한 천연가스배관망 설치 건의, 낙동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FTA 협상 관련 규제완화 등 경상북도의 수용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도읍 육성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도내 영양, 의성, 성주군수와 경북지사, 행자부장관이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4년간 각 군에 국비지원 100억, 도비지원 10억, 군비부담 90억으로 참여정부의 혁신 과제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이 행정자치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가 이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지난번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소도읍 육성협약의 효력 무산 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2.5배입니다. 현재 행자부가 추진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경북은 1.4%, 대구 2.1%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KDI 보고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미국을 이미 앞질렀으며, 양질의 고용창출은 경제상태를 지속한 반면 일자리 창출은 낮은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위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 정책이 매우 우려됩니다.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동해안 어족자원 및 어장 피폐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년부터 중국어선의 북한 원산만 수역에서의 대형 쌍끌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 중 특히 60~70% 비중을 가진 오징어는 2004년부터 2006년 9월 중순까지 어장이 피폐화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 어민은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대책은 2005년 10월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중국어선은 톤수에 관계없이 4개월에 1,800달러의 입어료를 북한 당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대책과 북한에 조업료를 지불하고 북한의 일정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섯째, 산림자원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8일 산림청 헬기로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과 재선충 피해산림을 직접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카시 나무의 황화 현상으로 밀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행정의 수혜가 적고 특히 목재생산 기능이 떨어지는 안동, 의성, 청송, 칠곡군 등 국유림의 대규모 밀원식물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7월 31일 교육감 선거에서 6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께는 감동을 주는 교육,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실현과 실력 있는 인재육성이란 슬로건으로 경북 교육호는 지난 8월 18일 출항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회초리엔 “정말 의욕적이다”, 교사 체벌엔 “조폭이냐?”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육현실 속에서도 경북교육청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 아직도 경북 교육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이 2005년 31위에서 금년에 38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입시 및 보습학원은 167%, 경북은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살인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교원사무보조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업무의 경감대책으로 교원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 공히 1인 배치는 아주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입니다. 전체 교원 사무보조 인력 981명 중 경북교육청 본청이 20%인 198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보조인력 배치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교육비 지원조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밑거름은 교육발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청포함 23개 시군 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비지원조례 제정,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교섭활동이 아주 미흡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여름휴가 중 대학생 멘토링 실적으로 예산 4,680만원을 투입, 대학생 234명이 20만원의 수당으로 초·중등학생 1,481명을 대상으로 교과지도 등 운영은 성과 나열식이며 전시행정으로 보입니다. 타시도 경우처럼 대학생에게 하루 6만원, 15일간 90만원을 지급해서 우리 대학생에게 학비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멘토링 제도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과 교원·일반직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직의 꽃인 교장직은 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란 개인의 승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무조정실 자료인 2005년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실적에 의하면 전체 비위적발 건수 3만 428건 중 교육부는 1만 5,300억원으로 30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사가 건수 채우기 식으로 공직기강확립 업무가 진행된다면 교사나 일반직 비위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대다수 교장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교육적인 교단의 책임자들이 폐교된 학교의 피아노 등 국유재산을 사물인양 개인집으로 가져가는 한심한 작태도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인양 여기는 교단의 책임자들은 모든 국유재산을 제자리에 똑바로 갖다놓고 후진을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각성을 촉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장임용제도의 개선방안과 교원·일반직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경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농민이 인간답게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김선유 시인의 ‘하늘과 땅과 생명을 섬기기 위해’란 시를 소개하며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키우는 이와 먹는 이가 하나 되고/

곡식 터는 힘과, 나르고 파는 힘이 손잡고/
쓸어 담고 간추리는 슬기와/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꾸미는 재주가/
한 술 밥 가족 된다면/
왜도 양도 무서울 게 뭐 있겠나/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006년 10월 12(목) 제210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李在喆 議員(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상주시 출신 이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9대 도지사로 당선되신 후 새경북 발전 구상에서 “일자리 넘치는 살맛나는 경북건설”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라는 도정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민선4기를 시작하신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 보람찬 교단을 일구어 갈 희망의 경북교육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조병인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경북도민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우리 경북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11년간 경북도의 발전상으로는 수출이 ’95년 83억달러에서 지난 해에는 387억달러로 4.7배가 늘었으며, 이는 전국수출 2,844억달러의 14%를 차지하고 무역흑자 또한 159억달러도 전국 흑자 232억달러의 69%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명실상부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을 경주에 유치하여 포항~경주~영덕~울진을 잇는 동부 연안권에 세계적인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세계최초 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특히 2003년 주제영상물인 화랑영웅 기과랑전이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다가오는 1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행사가 열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와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영덕~상주~서천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되는 등 도내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진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포항 영일만 신항개발 등 U자형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동해안을 중점 개발하고 있으며, 소백산~안동호 주변 지구 등의 북부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관용 지사님께서 선거운동시 “지발 좀 먹구 삼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도민들에게 먹고사는 걱정없는, 자식 공부시키는 걱정없는 경북건설을 공약하신 점을 앞으로도 분명히 되새기 시면서 도정을 펼쳐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이후 지금까지 동부연안권, 남부도시권, 중서부권에 편중하여 도정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지사님께서서는 새경북발전 구상 로드맵 발표, 경북·대구경제통합, 수도권 규제대응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 추대, 유럽사무소 개소식 참석, 도청조직의 경제투자 중심으로의 조직개편 등 도정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지역구는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상주, 문경, 예천 등 북부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 취임 후 3개월 동안의 행보 중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29일자로 상주에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의 확정 이외에는 저희 북부권과는 거리가 먼 나라의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의 희망이라는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잇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조성, 구미~칠곡~경산~포항을 잇는 첨단 IT산업벨트조성, 모바일 특구지정, 유망기업 도내유치,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김천을 고활력네트워크 혁신도시로 개발 등의 사업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낙후된 북부권 발전방안으로서는 봉화, 영주, 안동 등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바이오산업육성, 낙동강 뉴프론티어 프로젝트추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제고, 실버한방산업육성 등의 추진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육성 외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고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건 그 동안 소외 받아온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서글픈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포항, 경주, 구미, 경산지역 등에 국내외 기업 및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똑같이 북부권에도 내세울만한 기업 하나라도 끌고루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농민 사관학교, 도청이전, 영어마을조성 등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이러한 사업들이 소외된 낙후지역에 유치되어 도내 전 지역이 동반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가 7월 26일 발표한 낙동강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낙동강 뉴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본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와 발표시 낙동강 경북권역 연안 5~10km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경, 예천, 상주지역이 포함되는지와 개발사업비 3조 5,000여억원의 조성방법과 사업완료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추진한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8,681억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 155개 사업 6,678억원을 투자했으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기획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 관광 등 4대 전략사업 가운데 전자정보기기 분야는 314억원 43.1%가 투자된 반면 문화관광분야는 12.5%에 불과한 90억원으로 가장 적게 투자되었다고 밝혀졌고, 콘텐츠개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지역별, 단위사업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 하나의 사업이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면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농업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 이상 돈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산업의 후진성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블루오션이나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한다면 경쟁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생산된 농산물의 제값 보장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살기좋은 농촌건설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업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유통산업이며,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본의원은 경상북도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의 지역구인 상주는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서울간 2시간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완공 시 대전, 행정중심

북합도시와 1시간대, 대구와 1시간대 등 상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상도 4개 시·도민이 서울에 가는데 단지 거쳐가는 지역으로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쓰레기만이 버려지는 곳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주시에 도 및 농협 그리고 물류시스템을 갖춘 기업 등을 참여시킨 경상북도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의 택배회사 등 물류시설을 유치하여 경북을 대표하는 종합유통 체계를 갖춘 유통물류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 경북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의 최단시간 내 공급으로 제값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낙후된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가 옛 명성을 되찾아 웅도 경북 영광 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경상북도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LNG의 북부권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상주시를 비롯 문경, 영주, 예천, 안동 등 도내 북부지역 시·군은 2008년 이후에야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장기 공급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북의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 주민들은 LNG가 공급되지 않아 현재 겨울철 난방과 산업체 연료를 액화프로판가스 즉 LPG 혹은 경유와 등유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이 늦어지면서 LNG에 비하여 고가의 연료 사용으로 서민경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LNG가 없으므로 인해 저비용의 에너지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지역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도내 북부권역에의 기업 유치에도 애로사항을 발생케하여 LNG의 조기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지역 시·군들은 지난달 초 안동시에서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9월 18일 상주시에서 두 번째 협의회를 열어 천연가스 조기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공급된다면 19개 산업단지 473개 산업체와 54만 1,000명의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부권역이 도내에서 가장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으로 올해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김천에서 상주시, 영주시를 잇는 배관망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바 이를 경북도 차원에서 북부권역의 시·군과 함께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재 상주에서 김천간의 27.7km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상주까지 1차적으로 병행 시공 건설하고 연차적으로 북부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어촌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고교 574곳을 우선대상으로 삼아 2009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676곳을 통

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교사 등의 인원을 5,226명 감축하고 3,1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모두 24개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의 추진근거는 앞으로 10년 내에 특히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학령 어린이가 40% 넘게 감소하고 두 세 학년이 한 학급을 이뤄 수업할 수 밖에 없는 초등학교나 비전공교사를 뒤야 하는 중·고교들이 급증하리라는 것이며, 때문에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읍·면은 도시의 두 배나 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보다 2~7배나 되는 고비용 비효율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농산어촌이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 계획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오직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어리석음과 농촌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고질적인 인식을 더욱 고착화시켜 농촌을 무시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통폐합이 실행될 경우, 농산어촌의 주민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인구유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구심점을 빼앗게 되어 공동체 의식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통폐합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통폐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읍·면은 도시의 두배나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도시와 도서 벽지 간 학력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벽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도시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 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리처럼 통폐합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정하고 도서벽지와 면소재지 소규모 학교의 학습방법 개선과 소규모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張吉和 議員(건설소방위원회) ◎

평소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동량지재의 양성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하나하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경북건설을 위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종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기금의 운영관리와 펀드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도의 기금운영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말 현재 개별법에 의거 22개종의 기금을 16종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총예산규모가 무려 4,428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기금이 있어 재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은 현재의 사회환경에 부적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기금과 포플러장학기금은 기금이 유사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성격상 도 교육청이나 민간단체로의 위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복지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사회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은 비록 개별법에 의거 조성하고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고 체육진흥기금은 도체육회와 청소년육성기금은 도 사업소인 자연환경연수원에 흡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기금의 통·폐합, 시대적 환경에 부적합한 기금의 과감한 폐지와 기금의 형평성과 효율성 있는 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사님께서서는 본의원의 정책적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즉각 실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집행부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한 실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해당 실·원·국에서 필요한 개인이나 이해관계 협회나 단체 등에 개별기금조례에 의거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가칭 기금 지도감독 평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거 모든 기금을 지도감독 평가하는 기금 지도감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이를 수용할 의사는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펀드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1조원의 펀드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성하고 또 조성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예정이신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정책대안에 앞서 제시한 16종 기금을 통·폐합하여 조정결과 남는 약 3,000억원 정도를 펀드조성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자금은 23개 시·군과 민간 기업, 단체, 협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640억원 흡수방법 등을 강구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본의원의 정책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성된 1조원의 펀드는 반드시 우리 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투자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사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도청의 조직과 인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인턴공무원제도나 공공근로사업 등은 가계에 다소 도움은 줄지 몰라도 매우 한시적이고 임시적 취업대책임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이 아닌 경우 신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제도 등을 개별기업까지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해 수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의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충분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 내에 공업, 준공업 지역이나 도시지역 외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본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기업유치 초기단계부터 공장신축·가동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칭 기업지원 시스템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8개 업종만 허용해도 우리 경북은 약9,45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데 만약 수도권에 대기업 신·증설이 2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면 4조 9,500억원의 생산 감소와 2만여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어 이렇게 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업계 경영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도내 버스업계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외버스 업체가 15개 업체에 1,138대의 버스가 861개 노선에 운행 중이고 시내 농어촌버스가 28개 업체에 1,326대의 버스가 1,588개 노선에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태는 2005년도에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국비 36억원, 도비 67억원, 계 103억원이고 시·군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 농·어촌버스업체는 국비 34억원, 시·군비 34억원, 계68억원으로 연간 총 지원금액은 무려 171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외버스 15개 업체와 시내농어촌버스업체간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조정하는 것이 버스업체의 적자폭을 줄이는 최선의 경영개선방안이라고 보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막대한 국·도비를 버스업체에 지원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도차원에서 버스업체 경영실태를 분석 평가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매년 적자액은 어느 정도이며 적정 지원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경북방문의해를 계기로 관광객유치차원에서 화장실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주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거의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방폐장 사업의 해결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방폐장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 반입수수료 연간 85억원, 한수원 본사이전을 보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투표를 거쳐 방폐장이 경북 경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양북면 일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주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주민들과 경주시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주시내 주민들 간의 상호 주장과 경주시와 한수원 측의 입장도 서로 달라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선정이 당초 지난 8월말까지 완료키로 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 작금에 와서는 제2의 불안 사태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 수습하여 한수원 본사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학급총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저출산에 따른 적정규모의 학급 운영 등을 위해 학급당 35명 선을 기준으로 하는 학급총량제를 실시

하여 학급수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학급총량제가 추진될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학급총량제가 강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운영곤란 학교 통·폐합을 비롯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폐교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개교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활용 또는 보존가치가 없는 시설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즉각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은 유상대부나 그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 e-러닝 학교와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금의 황폐한 교육현실에서 경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e-독서친구라는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반갑고 신선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e-러닝을 대폭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차원에서 학교급식비의 지원단가와 지원액을 인상하여 전액 무료로 지원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경제과학진흥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적자는 몇 개 노선이고, 흑자나는 노선은 몇 개입니까?

흑자노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하여 본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에 의하면 15개 업체가 7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03억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해도 약 7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따르면 매년 약 15개 업체에 45억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분명한 도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기법을 알려 주시고, 우리 도 및 대한민국 전체가 버스운송조합 경영기법에 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원가 자체를 원가산출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용역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 관련 운행 노선현황입니다.

현재 부산, 울릉 전체 6개 회사가 1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으로 보면 부산~강릉, 울산~인천, 울산~성남, 울산~안양, 울산~부천, 울산~인천공항, 부산~인천공항, 마산~인천공항, 창원~인천공항, 동서울~순천, 성남~순천, 진주~인천, 부산~춘천, 방어진~부산 이렇게 6개 회사에서 14개 노선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북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하는 거의 다 무정차 운행입니다. 이러한 노선에도 경북도가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 줘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시정하고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 의거하면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지원한 근거가 지금까지는 불법이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환수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와 52조에 보면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2000년 1월 28일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지 않고 지원한 자체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잘못된 부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이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5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개정이 되어서 발표한 이러한 사업들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시·도별 업계의 제정지원 현황으로 보면 전체 도별로 보면 경남과 경기도의 경우는 굉장히 제정지원 현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업체에서 노선별로 매일 수입, 지출, 수지분석을 전산화하여 회계법인에서 매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는 2005년부터 매년 운송수입 조사결과를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총 적자금액중 흑자노선별 흑자금액의 20%의 금액을 감액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적자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시어 참조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와 벽지노선 또는 적자버스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적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도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2006년도분부터 적용하거나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금년분은 보조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방법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 록

● 조 례 안 : 7건

● 결 산 안 : 2건

● 결 의 안 : 1건

● 승 인 안 : 1건

■ 조례안 : 7건

-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

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상북도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기금 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본부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도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기획조정본부장
2. 분임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팀장
3.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의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 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 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결손의 보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 의한 지정금고예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257조에 의거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서 정의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
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내 기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원
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자가 납부하는 원자력관련 지역
개발세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인접
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
한다.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포함)를 우선 배분하고 이를 시·군별 발전비율에 따라 재배분
2. 도 자체사업 35%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사용
한다.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인접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3.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홍보 사업

6.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
7.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출자 및 경영)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시

②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정착의욕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라 함은 경상북도에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민간인”이라 함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자로서 생계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생계비 지원)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7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1의
구분란 중 [2]를 삭제하고, [3] 내지 [6]을 각각 [2] 내지 [5]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인터넷 발급 증명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초등학교 재학생에게 발급하는”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징수 구분표(검정고시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기준	수 수 료	법 령 근 거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1통 "	200원 200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61조
[2]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1인당 1통 " "	10,000원 200원 200원 200원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 고시규칙 제12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 고시규칙 제17조
[3]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 응시수수료 (시험전형) ○ 응시수수료 (무시험전형)	" "	5,000원 2,500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
[4]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 응시수수료 · 일반교과목 · 실기시험부과 교과목 ○ 합격증명서	1인당 " 1통	25,000원 35,000원 300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행규칙 제19조 및 동규칙 제21조
[5] 제증명 수수료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수료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또는수료예정 증명서 ○ 제적증명서 ○ 공사실적증명서 ○ 신원예 관한 증명서 ○ 기타증명서	1통 " " " " " " " " "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300원(국문) 600원(영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61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라 함은 검정고시 수수료, <u>일화배정수수료</u>, <u>〈삭제〉</u>, 시험수수료, 증명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제2조 (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라 함은 검정고시 수수료, 시험수수료, 증명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 (수수료 징수) ①~③ (생략) <u>〈신설〉</u>	제4조 (수수료 징수) ①~③ (현행과 같음) <u>④인터넷 발급 증명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u>
제6조(수수료 면제 등) ①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u>초등학교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u> 4. (생략) <u>〈신설〉</u>	6조 (수수료 면제 등)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외무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u> 각종 증명 4. (현행과 같음) 5. <u>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u>

현 행

[별표 1]

수료정수 구분표(검정고시수수로 등)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법령근거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1통 "	200원 200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채정법 제61조
[2] 중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배정원서 (중학교 지역) ○배정원서 (중학교 지역) ○응시수수료	1통 " "	500원 200원 10,000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검정고시 수수료	○응시수수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1통 " " "	10,000원 200원 200원 200원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 고시규칙 제12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 고시규칙 제17조
[4]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응시수수료 (시험전형) ○응시수수료 (무시험전형)	" "	5,000원 2,500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
[5]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수수료	○응시수수료 · 일반고과목 · 실기시험 · 교과목 ○합격증명서	1인당 " 1통	25,000원 35,000원 300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 및 동규칙 제21조
[6] 제증명수수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제학증명서 ○졸업포는수료 예정증명서 ○제학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신원관련 증명서 ○가타증명서	1통 " " " " " " " "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채정법 제61조

개 정 안

[별표 1]

수료정수 구분표(검정고시수수로 등)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법령근거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1통 "	200원 200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채정법 제61조
〈삭제〉				
[2]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검정고시 수수료	○응시수수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1통 " " "	10,000원 200원 200원 200원	고등학교 입학자격검 정고시규칙 제12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7조
[3]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응시수수료 (시험전형) ○응시수수료 (무시험전형)	" "	5,000원 2,500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
[4]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	○응시수수료 · 일반고과목 · 실기시험 · 교과목 ○합격증명서	1인당 " 1통	25,000원 35,000원 300원	교육공무원임용후보 자선정경쟁시험시행 규칙 제19조 및 동규칙 제21조
[5] 제증명수수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제학증명서 ○졸업포는수료 예정증명서 ○제학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신원관련 증명서 ○가타증명서	1통 " " " " " " "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300원 (국문) 600원 (영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채정법 제61조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1항의 “1. 기금운용관 : 농정국장”을 “1.
기금운용관 : 농수산물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기금의 심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u> 5. <u>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생략 1. 기금운용관 : <u>농정국장</u>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현행과같음. 1. 기금운용관 : <u>농수산국장</u>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0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도내의 수상구조 관련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

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4.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난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제5호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도내 시·군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 2 장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 ·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4. 그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④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5월까지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배치기준) ①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 · 운영할 수 있다.

1. 연이용객 30만 미만 : 5명 이상
2. 연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10명 이상
3. 연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15명 이상
4. 연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20명 이상
5. 연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25명 이상
6. 연이용객 150만 이상 : 30명 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장비) ①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상안전 시설·장비중에서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②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해양수산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기타 물놀이장소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8조(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 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수난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제) ①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근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 · 교육훈련 등

제13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 가.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 · 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 나.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 다.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 라. 기타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 가. 지역 수난구조 관련 단체회원 및 사회단체회원
-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 의용소방대원
-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마. 기타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모집·선발) ①소방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①소방관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경상북도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발대행사)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7조(활동실비)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호) ①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중에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산안 : 2건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5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6. 10.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2006. 10. 18,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정·질의

○ 2006. 10. 19,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정·질의·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정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5회계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4.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 괄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11억 5,634만원을 포함하여 3조 5,718억 934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3조 7,023억 6,983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3조 3,604억 9,172만원이며
 - 잉여금은 3,418억 7,811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8억 1,848만원임.

<세입·세출 결산 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입 (B)	세출 (C)	세계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5,718	37,024	33,605	3,419	977	24	2,418
일 반 회 계	29,195	29,927	28,053	1,874	968	23	883
특 별 회 계	6,523	7,097	5,552	1,545	9	1	1,535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55억 8,601만원을 포함하여 2조 9,194억 8,401만원으로서
 - 세입결산액은 2조 9,926억 7,440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2조 8,053억 1,865만원이며
 - 잉여금은 1,873억 5,575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3억 5,985만원임.

(2) 특별회계

- 2005년도 경상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억 7,033만원을 포함하여 6,523억 2,533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7,096억 9,543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551억 7,307만원이며
 - 잉여금은 1,545억 2,235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4억 5,862만원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예 산 현 액	3,571,809	100.0	2,919,484	100.0	652,325	100.0
세 입 결 산 액(A)	3,702,370	103.7	2,992,675	100.3	709,695	108.8
세 출 결 산 액(B)	3,360,492	94.1	2,805,319	96.1	555,173	85.1
잉 여 금(A-B)	341,878	9.6	187,356	6.4	154,522	23.7
명 시 이 월	52,514	-	51,964	-	550	-
사 고 이 월	45,142	-	44,760	-	382	-
보조금집행잔액	2,404	-	2,272	-	132	-
순 세 계 잉 여 금	241,818	-	88,360	-	153,458	-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세 계 잉 여 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35,718	37,024	33,605	3,419	977	24	2,418
일 반 회 계		29,195	29,927	28,053	1,874	968	23	883
특 별 회 계		6,523	7,097	5,552	1,545	9	1	1,535
공 기 업	소 계	3,500	4,090	2,586	1,504	-	-	1,504
	지역개발기금	3,500	4,090	2,586	1,504	-	-	1,504
기 타	소 계	3,023	3,007	2,966	41	9	1	31
	의료급여기금	2,455	2,455	2,453	2	-	-	2
	치 수 사 업	374	366	347	19	7	-	12
	경도대학운영	66	66	58	8	2	-	6
	광역교통시설	128	120	108	12	-	1	11

2) 세입결산

가. 총 괄

-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 7,023억 6,983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조 5,718억 934만원 보다 1,305억 6,049만원이 증가(3.7%)
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80.8%인 2조 9,926억 7,440만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19.2%인 7,096억 9,543만원임.
- 2005년도 미수납액은 561억 6,681만원으로서, 39억 7,88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21억 8,79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세입부문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 손 처 분	익년도 이 월	
합 계	3,571,809	3,758,536	3,702,369	56,167	3,979	52,188	98.5
일 반 회 계	2,919,484	3,047,532	2,992,674	54,858	3,967	50,891	98.2
특 별 회 계	652,325	711,004	709,695	1,309	12	1,297	99.8
공기업특별회계	350,014	408,984	408,984	-	-	-	100.0
기타특별회계	302,311	302,020	300,711	1,309	12	1,297	99.6

$$\text{※ 예산현액} = \frac{\text{예산액}}{3,571,809\text{백만원}} = \frac{\text{예산액}}{3,440,653\text{백만원}} + \frac{\text{전년도 이월액}}{131,156\text{백만원}}$$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9,926억 7,44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9,194억 8,401만원 보다 731억 9,039만원(2.5%)이 증가 되었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6,991억 3,654만원, 세외수입 2,526억 8,650만원, 지방교부세 5,689억 5,473만원, 국고보조금 1조 4,718억 9,662만원.
- 미수납액은 548억 5,805만원으로, 39억 6,707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 508억 9,09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익 년 도 이 월	C/A	C/B
합 계	2,919,484	3,047,532	2,992,674	54,858	3,967	50,891	107.1	98.2
지 방 세	626,000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111.7	92.8
세 외 수 입	247,525	253,576	252,687	889	11	878	102.1	99.6
지방교부세	564,750	568,955	568,955	-	-	-	100.7	100.0
보 조 금	1,481,209	1,471,896	1,471,896	-	-	-	99.4	100.0

$$\text{※ 예산현액} = \frac{2,919,484 \text{백만원}}{2,919,484 \text{백만원}} = \frac{\text{예산액}}{2,793,898 \text{백만원}} + \frac{\text{전년도 이월액}}{125,586 \text{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96억 9,543만원으로 예산현액 6,523억 2,533만원보다 573억 7,010만원(8.8%) 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4,089억 8,438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2,455억 3,207만원, 치수사업 366억 654만원, 경도대학운영 66억 78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119억 6,464만원임.
- 미수납액은 13억 875만원으로, 1,17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 9,69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음.

<특별회계 세입부문 자원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익 년 도 이 월	C/A	C/B
합 계	652,325	711,004	709,697	1,307	11	1,296	108.8	99.8
지역개발기금	350,014	408,984	408,984	-	-	-	116.8	100.0
의료급여기금	245,532	245,542	245,532	10	-	10	100.0	100.0
치 수 사 업	37,535	37,310	36,608	702	11	691	97.5	98.1
경 도 대 학	6,601	6,608	6,608	-	-	-	100.1	100.0
광역교통시설	12,643	12,560	11,965	595	-	595	94.6	95.3

$$\text{※ 예산현액} = \frac{\text{예산현액}}{652,325\text{백만원}} = \frac{\text{예산액}}{646,755\text{백만원}} + \frac{\text{전년도 이월액}}{5,570\text{백만원}}$$

3) 세출결산

가. 총 괄

- 2005년도 세출결산액은 3조 3,604억 9,17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조 5,718억 934만원 대비 94.1%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조 8,053억 1,865만원, 특별회계에서 5,551억 7,30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2,113억 1,762만원중 이월사업비 976억 5,5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136억 6,17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세출부문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잔액)	지출비율 (B/A)
합 계	3,440,653	3,571,809	3,360,491	97,656	113,662	94.1%
일반회계	2,793,898	2,919,484	2,805,319	96,724	17,441	96.1%
특별회계	646,755	652,325	555,172	932	96,221	85.1%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8,053억 1,86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9,194억 8,401만원 대비 96.1%를 지출하였음.
- 성질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부 3,266억 797만원, 사회개발비 1조 1,100억 809만원, 경제개발비 1조 413억 4,649만원, 민방위비 1,233억 9,19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39억 6,414만원임.
- 집행잔액 1,141억 6,436만원중 이월사업비 967억 2,4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74억 4,1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 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2,793,898	2,919,484	2,805,319	96,724	17,441	96.1	3.3	0.6
일반행정부	326,351	329,888	326,608	851	2,429	99.0	0.3	0.7
사회개발비	1,120,658	1,123,866	1,110,008	11,778	2,080	98.8	1.0	0.2
경제개발비	1,001,668	1,124,120	1,041,346	77,816	4,958	92.7	6.9	0.4
민방위비	123,681	131,011	123,392	6,279	1,340	94.2	4.8	1.0
지원 및 기타경비	221,540	210,599	203,965	-	6,634	96.8	-	3.2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551억 7,30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6,523억 2,533만원 대비 85.1%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586억 828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2,452억 8,581만원, 치수사업 347억 3,207만원, 경도대학운영 57억 7,619만원, 광역교통시설 107억 7,073만원임.
- 집행잔액 971억 5,226만원중 9억 3,1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62억 2,0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646,755	652,325	555,173	932	96,220	85.1	0.1	14.8
지 역 개 발 기 금	350,014	350,014	258,608	-	91,406	73.9	-	26.1
의료급여기금운영	245,532	245,532	245,286	-	246	99.9	-	0.1
치 수 사 업	33,835	37,535	34,732	656	2,147	92.6	1.7	5.7
경 도 대 학 운 영	5,911	6,601	5,776	276	549	87.5	4.2	8.3
광 역 교 통 시 설	11,463	12,643	10,771	-	1,872	85.2	-	14.8

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광복60주년 독도사랑평화의 메시지선언 선포식 개최 1,300만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2,500만원 등 총 2건에 3,800만원이며,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 예산전용은 농업기술원 농업정보센터가 친환경생명산업지원 사업소로 직제개편 됨에 따라 6억 7,625만원임.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라. 예비비 지출

-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 173억 7,421만원 중, 호우피해복구 외 14건에 109억 4,18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5억 3,185만원을 지출하고, 2억 6,75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1억 4,2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용역』 등 87건에 976억 5,584만원으로
 - 그 중 명시이월이 49건에 525억 1,431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451억 4,153만원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48건에 519억 6,398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447억 6,003만원 등 총 84건에 967억 2,401만원이고
 -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5억 5,033만원, 사고이월 2건 3억 8,150만원 등 총 3건 9억 3,183만원임.
-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등 7건에 300억원임.
-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5. 세입·세출의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05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2,567억 9,658만원 보다 334억 787만원이 감소한 2,233억 8,871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4년말 현재액 (A)	2005년도 증감			2005년말 현재액 (E=A+D)
		수납액 (B)	지출액 (C)	증감 (D=B-C)	
계(16종)	256,797	79,260	112,668	-33,408	223,389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1,489	1,207	1,497	-290	1,199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4,445	405	387	18	4,463
체 육 진 흥 기 금	14,023	1,084	550	534	14,557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341	127	104	23	3,364
농 어 촌 진 흥 기 금	58,990	4,936	29,323	-24,387	34,60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14,135	62,505	77,119	-14,614	99,521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199	153	142	11	3,210
식 품 진 흥 기 금	15,607	3,036	1,028	2,008	17,615
포 플 라 장 학 기 금	220	8	8	0	220
사 회 복 지 기 금	5,911	271	45	226	6,137
재 해 구 호 기 금	14,755	587	317	270	15,025
장 애 인 복 지 기 금	2,081	83	70	13	2,094
노 인 복 지 기 금	2,473	101	100	1	2,474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3	84	92	-8	1,505
여 성 발 전 기 금	2,798	609	0	609	3,407
재 난 관 리 기 금	11,817	4,064	1,886	2,178	13,995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5년도말 현재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8,880억 4,500만원으로, 2004년도말 7,551억 3,300만원 보다 1,32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6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5,683억 6,100만원이고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3억 6,000만원, 융자금채권이 8,866억 8,500만원임.

<채권 종류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계	888,045	319,684	568,361	
보증금채권	1,360	1,360	-	○ 일반회계 • 서울사무소 등 숙소 임차 1,320 • 전화 전용회선 가입 40
융자금채권	753,901	263,080	490,821	○ 일반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 138,860 • 농어촌주택지원 93,487 • 농어촌진흥기금 64,505 • 식품진흥기금 3,472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7,769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231,000 ○ 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비 568,361

나. 채 무

- 2005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7,979억 5,007만원으로, 2004년말 7,722억 849만원 보다 257억 4,158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9억 7,720만원, 특별회계가 5,689억 7,287만원이고
-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689억 7,287만원, 차입금이 1,989억 7,720만원, 채무부담행위가 300억원임.

<채무 종류별 현재액>

(단위 : 억원)

구 분	회 계 별			채 무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계	7,980	2,290	5,690	
지 방 채	5,690		5,690	○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차입 5,690
차 입 금	1,990	1,990	-	○ 일반회계 • 정부자금 차입 448 • 지역개발기금 차입 1,524 • 청사정비기금 차입 18
채무부담행위	300	300	-	○ 일반회계 • 지방도 정비사업 200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0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5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5,524억 1,246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5,519억 5,469만원 보다 4억 5,777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파출소·대기소 부지 등 89억원과 도로건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서 6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달성 본리, 안동 북후면 도로 매각 등으로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건물에서는 예산작업실, 유아보호실 등의 건축으로 9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립노인요양병원, 소방청사 과대계상 등으로 240억원이 감소하였음.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단위 : 억원)

종 류 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5,520		5,524		4
토 지	184백만㎡	4,461	183백만㎡	4,607	1백만㎡	146
건 물	689동	896	583동	754		△142
입 목 족	546천㎡	95	546천㎡	95		
공 작 물		9		9		
선 박	2척	21	2척	21		
항 공 기	1대	25	1대	25		
유가증권	252,953주	13	252,953주	13		

나. 물 품

- 2005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646억 8,009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585억 9,497만원 보다 60억 8,512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중형승용차(14대) 및 전자복사기(23대) 등 업무용에서 9억원, 소방차(43대) 및 특수차량 등 사업용에서 5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2005년말 종류별 물품 현재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7,718	586	7,565	646	△153	60
업 무 용	5,460	90	5,247	99	△213	9
사 업 용	2,258	496	2,318	547	60	51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05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3조 2,933억 8,500만원, 세출 3조 1,018억 8,300만원으로
1,915억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400억원을 2006년도로
이입하고 연도말 잔액은 1,515억 2,100만원임.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 구 분		세 입	세 출	2006년 이입	잔 액
합	계	3,293,385	3,101,883	40,000	151,502
일	반 회 계	2,992,674	2,805,318	40,000	147,356
특 별 회 계	계	300,711	296,565		4,146
	의료급여기금운영	245,532	245,286		246
	치 수 사 업	36,606	34,732		1,874
	경 도 대 학	6,608	5,776		832
	광 역 교 통 시 설	11,965	10,771		1,194

나. 세입세출외 현금

- 2005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의 잔액은 10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3,100만원 보다 8억 3,7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관금이 3억 4,900만원, 기타 7억 4,400만원임.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2004년도말 현 재 액	2005년도			2005년도말 잔 액
		당기증가	당기지출	차 감 액	
합 계	1,931	35,067	35,904	△837	1,094
보 증 금	0	1	0	1	1
보 관 금	343	9,220	9,214	6	349
기 타	1,588	25,846	26,690	△844	744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조 5,718억 93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3조 2,273억 1,133만원 보다 3,444억 9,801만원(10.7%)이 증가하였으며,
- 2000년부터 최근 6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11.2%임.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 장 륜(%)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21,010	25,609	35,501	38,598	32,273	35,718	11.2	10.7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7%인 3조 7,023억 6,983만원 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1%인 3조 3,604억 9,172만원 으로
 - 결산잉여금은 3,418억 7,81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525억 1,431만원, 사고이월 451억원 4,153만원 등 이월사업비 976억 5,584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380만원
 - 순세계잉여금 2,418억 1,847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4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 부문은 연평균 0.1% 감소하고, 세출부문은 1.5%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2005년도 결산결과는 세입부문이 7.9%, 세출 부문이 10.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이 11.1%, 세출 부문이 11.6%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3.8% 감소하고 세출부문이 2.5%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감소요인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6.2%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5.1%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05년 세입결산액의 68%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4%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의존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2004년도에 각종 재해 발생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2005년도에는 태풍 매미 등 호우피해 복구비가 많았던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됨.
- 한편, 중앙부처에 예산요구시 중앙부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작성, 전도가 유망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의 극대화에도 노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규모를 확장해야 할 것임.

<세입·세출 4년간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 장 율(%)	
						연평균	전년대비
세 입 (A)	합 계	3,709,992	4,039,013	3,430,380	3,702,370	△0.1	7.9
	일반회계	3,072,282	3,344,954	2,692,516	2,992,674	△0.9	11.1
	특별회계	637,710	694,059	737,864	709,696	3.6	△3.8
	공기업	412,907	447,709	475,633	408,985	0.3	△14.0
	기 타	224,803	246,350	262,231	300,711	10.2	14.7
세 출 (B)	합 계	3,214,927	3,508,679	3,054,138	3,360,492	1.5	10.0
	일반회계	2,819,146	3,214,926	2,512,646	2,805,319	0.2	11.6
	특별회계	395,781	414,342	541,492	555,173	11.9	2.5
	공기업	186,456	182,237	286,033	258,608	11.5	△9.6
	기 타	209,325	232,105	255,459	296,565	12.3	16.1
잉여금 (A-B)		495,065 (13.3%)	530,334 (13.1%)	376,242 (11.0%)	341,878 (9.2%)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2004년 대비 증감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예산현액	%	결산액	%
계	26,704	29,195	26,925	29,927	2,491	9.3	3,002	11.1
지 방 세	5,680	6,260	6,014	6,991	580	10.2	977	16.2
세 외 수 입	3,396	2,475	3,373	2,527	△921	△27.1	△846	△25.1
지방교부세	4,762	5,648	4,626	5,690	886	18.6	1,064	23.0
보 조 금	12,613	14,812	12,659	14,719	2,199	17.4	2,060	16.3
지 방 채	253	0	253	0	△253	△100	△253	△100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926억 7,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408억 5,13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8.2%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18.1% 증가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518억 2,30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1억 9,280만원으로 1.4% 증가하였음.
 - 2005년 지방채는 기채 실적 없음(2004년 : 253억원).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지방세는 7,531억 5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991억 3,654만원을 징수하고 539억 6,873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39억 5,59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00억 1,27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외수입은 2,535억 7,58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26억 8,650만원을 징수하여 8억 8,932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1,10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억 7,8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지방세 체납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9%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5년에는 7.2%로 낮아지고 있는 바, 이는 주민들의 체납세에 대한 의식향상과 TV, 신문 등 언론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 미수납액 500억 1,275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151억 300만원(30.2%)으로 전년도 83억 1,500만원(17.2%)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실정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체납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결손처분	차년도이월	
2001년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8.8
2002년	607,576	555,188	52,378	2,107	50,271	8.6
2003년	612,682	557,352	55,330	7,363	47,967	9.0
2004년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8.5
2005년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7.2

<지방세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	기타
지방세	50,013 (100.0%)	4,486 (9.0%)	4,694 (9.4%)	15,103 (30.2%)	21,950 (43.9%)	3,780 (7.7%)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096억 9,54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4,089억 8,438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455억 3,207만원, 치수사업이 366억 654만원, 경도대학운영이 66억 78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119억 6,464만원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4,089억 8,438만원으로 예산현액 3,500억 1,400만원 보다 117% 초과하여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조기상환 및 공채 매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05년도에 총 7,110억 41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96억 9,543만원을 징수하고 13억 875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1,17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 9,69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8,053억 1,865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9,194억 8,401만원의 96.1%를 지출하였음.

(2)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 7,421만원으로서 호우피해 복구비의 14건 105억 3,185만원을 지출하고 2억 6,7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2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200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 중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는 2회에 걸쳐 2억 1,67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 지출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출하여
-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비비 지출의 대부분은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복구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48건, 사고이월 36건으로 총 84건에 967억 2,401만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6,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사업추진계획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나
- 이월사업 중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비, 도로사업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항구복원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조기에 발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완공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또 다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의 능력배양과 기관장 관심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도내 완료하지 못할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월하기 보다는 이를 줄여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야 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

- 세출결산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7,190만원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립 너어싱홈 신축사업 7억 3,879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억 8,627만원, 과수정비사업 2억 682만원 등이 발생하였음.
- 국비확보에만 노력하고 집행에는 소홀하여 반납하거나 사전 무리한 계획으로 추진하다 중단하는 경우 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미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 변경 및 취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5,551억 7,307만원으로, 예산현액 6,523억 2,533만원의 85.1%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5억 5,033만원, 사고이월 2건 3억 8,150만원 등 9억 3,1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62억 2,043만원이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적자 발생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로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운영하고 있으며
- 2005. 12. 31 현재 재무현황은 자산 7,262억 9,194만원, 부채 6,210억 5,642만원, 자본 1,052억 3,732만원이며, 당기순손실 15억 7,113만원이 발생하였음.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융자금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율은 변동기간이 5년으로 길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려 당기순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요구됨.

<경영분석 지표>

(단위 : %)

구 분	2005년	2004년	증 감	비 고
당 좌 비 율	123.31	166.81	△43.5	
자 기 자 본 구 성 비 율	14.49	15.55	△1.06	
부 채 비 율	590.15	543.24	46.91	
매 출 액 순 이 익 율	△8.36	21.37	△29.73	
자 기 자 본 순 이 익 율	△1.48	3.70	△5.18	
총 자 본 회 전 율	0.03회	0.03회	-	
자 기 자 본 회 전 율	0.18회	0.17회	0.01회	

4) 세입세출외 부문

가. 기금운영

- 2005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2,567억 9,658만원 보다 334억 787만원이 감소한 2,233억 8,871만원임.
- 이중에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재민에 대한 응급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등의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제2항1호에 의거 지방세수입 결산액 전 3년간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도 재해구호기금은 수납액 5억 8,700만원, 지출액 3억 1,700만원으로써 수납액에 비해 지출액은 많지 않지만 의무적립액은 28억 5,600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만약 우리 지역에 폭우나 각종 재해가 발생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므로 향후 재해 발생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의무경비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결산서 작성제출시의 보완 요구사항

-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번에 제출된 경상북도의 결산보고서는 회계결산에만 주안이 되어 있고,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보고는 제외되어 있어 다음연도 주요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결산보고 시는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나타내는 결과분석이 필요하며
 - 결산서 작성내용에 있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율은 백분율로 나타내어 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 작성하여 이월액이 재이월 처리되지 않았는지, 사고이월로 불용처리 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월사업 집행 결과는 반드시 별도조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보조자료도 정확성을 기하여 결산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이월사업 조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 내역, 불용액 내역, 순세계잉여금 내역 등은 별첨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 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조례제정 없이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 집행부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토록 하고, 조속히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하였음.

9. 종합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보 조 자 료

1. 이월사업비 내역 / 173
 - 일반회계 / 173
 - 특별회계 / 186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 187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188
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 189
 - 총 괄 / 189
 - 계획변경 취소 내역 / 190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 191
5. 순세계잉여금 내역(일반회계) / 192
6.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 193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 194

1. 이월사업비 내역

가. 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51,963,978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용역	70,000	제3차도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기획관실
중앙집중관리 및 업무용S/W구매설치	120,000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이월		정보통신담당관실
혁신선도자치단체 컨설팅 용역	600,000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혁신분권담당관실
직원 복무관리 시스템S/W 개발	30,000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와 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이월		총 무 과
화재피해 문화재 보조사업	198,500	설계절차 등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문화재관리과
화재피해 문화재 보수사업	1,5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처리 기준용역	50,000	연내 용역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경상도 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00,000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도내 용역계약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문화재관리과
경북 서원지 학술 연구용역	150,000	제2회 추경 예산확보 및 용역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도내 발주가 곤란하여 명시이월		"
경북유학유물지 발간자료 수집	80,000	12월 추경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
경상도 역사관 실시설계 용역	160,000	추경 예산확보 및 용역사전절차 이행 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전국체전개폐회식 추진계획공모시상	30,000	관련기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이월		전국체전기획단
(재)대구경북한방 산업진흥원지원	1,400,000	법인설립 절차 등 이행기간이 소요 됨에 따라 연도내 출연이 불가능하여 이월		보건위생과
노인전문간호센터 (니어싱홈)신축	700,000	입찰공고 등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이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니어싱홈)신축	1,300,000	입찰공고 등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이월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2,238,000	공사완공일이 '06.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보건환경연구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445,825	제반사항 이행에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노인복지과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장비 구입	448,000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비 이	월에 따른 이월	"
위성영상지도제작 및 경복전자지도정비	280,000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주택지적과
농외소득개발 연구용역	100,000	원가산출 등 이행기간 소요로 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이월	농 정 과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지방어항시설	3,652,300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해양수산과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지방어항시설	2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건립	781,566	수입원자재 통관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민물고기연구센터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건립	4,8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건립	418,434	민물고기환경 생태체험관 건립 공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수족관 공사도 부득이하게 이월	"
풍력발전기 수리	200,000	정밀진단이 '06 1~2월경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	과학기술진흥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 R&D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	100,000	대구시 예산미확보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		기업노동과
BT산업사업화기술 과제 공모	239,584	바이오 기술과제가 총 6건 중 2건만 가능하여 추가로 바이오기술과제를 공모하기 위하여 이월		지역산업과
태풍나비피해 복구	6,904,335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산림자원개발과
사방사업(야계사방)	160,400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
왕경도시립 조성	4,986,500	'05. 9. 8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공일이 '06. 9. 21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태풍나비피해복구	161,876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태풍나비 피해복구	78,206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왕경도시립 조성	13,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천연기념물교육용 홍보관 설계	179,560	실시설계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조성	250,000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생태숲 조성	500,000	공사기간이 '05년 4월부터 '06년 12월 까지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조성	5,6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		"
생태숲 조성	10,033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생태숲연구동 연구기자재 구입 등	220,000	생태숲조성 사업이월에 따른 연구동기 자재 구입비 이월		"
야생동물생태 관찰원 조성	986,230	준공예정일이 '06. 2월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대체농지 조성비 및 묘지이장	216,533	'05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 였으나 묘지 이장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		"
야생동물생태 관찰원 조성	3,960	시설비 이월에 다른 감리비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394,000	'0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 천 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300,000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부산국토 관리청에서 설계검토 중임	도 로 과	
국가지원지방도 감리사업	5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1,242,315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	종합건설사업소	
태풍나비피해 복구	1,649,252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	"	
태풍나비피해 복구	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지방도 사업	910,588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지방도유지 관리	921,820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사업	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2,862,529	도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태풍나비피해 복구 (지방도)	3,749,565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		"
태풍나비피해 복구비 (지방도)	2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지방도 사업	413,861	제반이행과정을 거쳐 '05. 7. 12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이 '06. 6. 7 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지방도유지보수 사업	356,756	'05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소방헬기보강사업	2,600,000	헬기구매를 위한 외자구매계약이 '04. 11. 16 체결되고, 제작기간이 480일 소요되어 '06년 3월 납품예정		방호구조과
무선페이징 장비 구입	595,000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의 조달구매계약이 '05. 11. 15 체결되었으나 무선페이징 단말기 제조 납품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월		"
소방헬기 격납고 설계	77,000	헬기 격납고 신축 이월에 따른 설계비 이월		"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1,657,000	공군제11전투비행단 부지내 헬기격납고 신축사업을 추진 중 민간항공기 운항에 따른 무선통신시 장애가 판단되어 안전테스트 시험결과 후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소방항공대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	80,000	헬기 격납고 신축과 연계한 장비 및 집기 구입비를 헬기 격납고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44,760,026			
도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위탁 운영	13,740	1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어 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의회사무처
재래시장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17,500	계절별 특성화 자료와 사진자료 수집 기간이 지연되어 이월		경제교통정책과
2006년 전국체전 마스코트 제작	13,950	전국체육대회 마스코트 주제 변경으로 인해 디자인 재구성에 따른 공기부족 으로 이월		전국체전기획단
2006년 전국체전 매뉴얼 제작	10,000	전국체육대회 마스코트 주제 변경으로 인해 디자인 재구성에 따른 공기부족 으로 이월		"
개발촉진지구사업 (영주-순흥간도로 확포장)	300,273	계약 사업 추진 중 동절기 사업중지 등 준공기일 미도래로 이월		지역개발과
개발촉진지구사업	2,867,000	'05. 9. 21 착공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동절기 사업 중단 등 절대공기 부족 이월		"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5,20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AI대비 방역복 등 구입	9,050	원자재 수출국으로부터의 통관지연에 따른 납품기일 지연으로 불가피 이월		축 산 과
지방어항기본계획 변경 용역	71,460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용역계약 기간 미도래로 이월		해양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동북아연합경제통상 네트워크 구축	368,050	제반절차이행에 따라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4개월의 확보가 불 가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홍보CD 영상물 제작	12,700	'05. 10. 20일자로	완성품을 납품 받았 으나 채주의 미청구로 이월	투자유치과
전략, 차세대성장 동력산업발전계획 수입 용역	35,000	권역별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보안 및 '05. 8월 학술용역원가계산 의뢰 등 행정 절차이행으로 공기 부족 이월	지역산업진흥과
제4차 권역별개발계획 수립 용역	150,400	용역계약기간까지	11개월이 소요되어 기간 미도래로 이월	관광진흥과
2007경북방문의해 사업계획수립용역	29,000	용역계약 기간까지	계약기간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	"
사방사업	2,083,926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 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조치로 공기 부족 이월	산림자원개발과
임도시설 사업	109,200	공사장에 동절기 공사	강행시 임도의 품질저하가 우려 공사중지 조치로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신라왕경숲 조성	2,558,988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862,814	'05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 천 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2,95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하 천 과
지방도 채물용지 매입	42,533	보상금 지급에 따른 협의지연 및 감정 평가 최소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도 로 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9,534,850	동절기공사중지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절대적 공기부족으로 이월	"
지방도양여금 사업	2,272,199	동절기공사중지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절대적 공기부족으로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113,81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573,366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지방도양여금사업	171,32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지방도 사업	3,367,835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
지방도 사업	176,3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지방도 사업	44,228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 로 과
지방양여금 사업	212,405	임고~죽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상비 이월	종합건설사업소
8.2-8.11 호우 피해복구비	93,925	부항도로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
태풍나비피해복구	370,952	사업추진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	"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76,959	봉산도로외 1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
지방도 사업	1,379,051	달성~남정간 도로외 2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
지방도유지관리사업	1,183,441	동절기 공사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 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	"
교량안전정밀진단 기술용역	21,566	남서천 교량정밀안전진단사업은 동계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
지방도양여금 사업	12,773	모고1교 개체고사와 1건에 대한 토지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40,824	낙화암도로 선형개량외 2건의 공사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태풍메기피해복구 사업	591,707	산성교 수해복구공사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		"
태풍나비피해복구 사업	54,854	소방방재청 실시설계용역 사전 심의 중에 따른 용역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		"
지방도 사업	136,444	영해국도연결 재포장의 1건에 대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및 관급자재 미지급분 등으로 부득이 이월		"
지방도유지보수사업	497,688	지방도유지보수공사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
구조차보강 사업	137,692	사전 원자재 확보 등 자재수급에 차질이 있어 납품지연에 따른 이월		소방행정과
소방장비 보강	839,731	계약업체의 영세성으로 사전 원자재 확보 등 자재수급에 차질이 있어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		"
응급의료장비 및 탐색탐지 장비	292,358	입찰참가선정업체가 2번이나 무자격 업체로 낙찰됨으로써 부득이 수의시담으로 '05. 12. 29 계약체결 함으로써 구입시기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방호구조사업

나. 특별회계

○ 명사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550,330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546,730	'0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이월	하 천 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3,6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 사고이월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381,500		
운동장잔디 및 우레탄설치 공사	276,000	설계용역을 거쳐 '05년 10월 계약하였으나 연약지반 치환 및 운동장 보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경도대학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05,500	'05년 7월에 착공하였으나, 과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하 천 과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액(천원)	비 고
계		2,271,898	
일반행정비	소 계	33,055	
	• 사이버 낙동강 탐방 시스템	12,725	정 보 통 신 과
	•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20,330	자 치 행 정 과
사회개발비	소 계	890,853	
	• 장애인 자녀 교육비	24,843	사회노인복지과
	• 자활후견인제	7,000	"
	• 보육교사 보수교육	12,062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08,161	"
	• 도립 너어싱홈 사업	738,787	보 건 위 생 과
경제개발비	소 계	1,326,825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85,449	농 산 과
	•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286,268	"
	• 2005과수원 정비사업	206,822	유 통 특 작 과
	•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4,543	과학기술진흥과
	• 숲가꾸기 사업 등	633,743	
민방위비	소 계	21,165	
	• 민방위 교육훈련	3,027	민방위재난관리과
	• 소방헬기 응급의료 장비 등	18,138	방 호 구 조 과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총액 : 17,374,210천원
- 집 행 : 10,531,848천원
- 잔 액 : 6,842,362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집 행 사 유	관 련 부 서
계	10,531,848		
도의원 보궐선거	300,619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자치행정과
소나무재선충방제	241,420	소나무재선충방제 및 산림복구비	산림과
주택피해복구비	150,300	주택피해복구 및 호우피해복구비	주택지적과
피해복구비	1,919,625	농작물, 축산, 주택, 관광시설복구비	농산, 유통특작, 축산, 주택, 관광진흥과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 및 식대	44,030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 및 식대	김천, 칠곡소방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20,000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종합건설사업소
호우피해 복구비	7,146,726	호우피해 복구비	농산, 산림, 새마을, 문화재, 축산과
공무원수당지급	100,000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원	총무과
태풍나비피해 복구비	509,128	태풍나비 피해복구	농업기반, 유통, 축산, 해양수산, 산림과
태풍나비응급 복구비	100,000	태풍나비 응급 복구비	민방위과

4.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22,256,061	17,441,355	4,814,706
계 획 변 경 · 취 소	824,078	164,078	660,000
집 행 사 유 미 발 생	1,568,021	136,019	1,432,002
예 산 절 감	1,065,049	881,513	183,536
예 산 집 행 잔 액	7,605,666	6,657,700	947,966
보 조 금 집 행 잔 액	3,644,860	3,169,677	475,183
예 비 비	7,548,387	6,432,368	1,116,019

○ 계획변경·취소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해 당 부 서	금 액	사	유
계	164,078		
기 획 관 리 실	53,770	정책개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비 및 제수당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국내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계획 취소	
혁신분권담당관실	3,000	당초 혁신추진 평가를 통하여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을 계획하였으나, 행자부에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혁신평가와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별도의 시상이 불필요하여 계획 취소	
유 교 문 화 권 개 발 사 업 단	4,700	당초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 워크숍을 계획했으나 2006년 예산확보 및 정산으로 계획 취소	
농 산 과	29,790	민간인 시상예산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의거 계획 취소	
기 타	72,818	영덕 원남공부방이 아동복지지원센터로 전환되면서 보조금 교부대상에 제외되어 계획 취소 등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해 당 부 서	금 액	사	유
계	660,000		
지역개발과	660,000	2005년도 교특회계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액 부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계획 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해 당 부 서	금 액	사 유
계	136,019	
경 제 교 통 정 책 과	2,000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거 부상(시계)을 수여할 수 없어 미집행
정보통신담당관실	8,013	모범정보화마을 운영 및 홈페이지 우수모니터요원 등 민간인 시상예산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라 시상을 하지 않아 미집행
산 립 정 책 과	500	산림관련 전문 도서구입비로서 예산 미집행
방 호 구 조 과	27,059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보조하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기 타	98,447	일본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과기로 인한 국제교류원 조기귀국에 따른 미집행 등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해 당 부 서	금 액	사 유
계	1,432,002	
치 수 방 재 과	1,432,002	2005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하천사용료 등의 세입 부족으로 3/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1,448만원을 미집행

5. 순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이 월 액 (C)	순세계 잉여금 (A-B-C)	비 고
계	37,024	33,605	1,000	2,419	
일 반 회 계	29,927	28,053	990	884	
특 별 회 계	7,097	5,552	10	1,535	
의 료 급 여	2,455	2,453		2	
치 수 사 업	366	347	6	13	
경 도 대 학	66	58	3	5	
광 역 교 통 시 설	120	108	1	11	
지 역 개 발 기 금	4,090	2,586		1,504	

6.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사 유
	세 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계					38,000	38,000		
광복 60주년 독도사랑평화의 메시지 선언 선포식	1221 공보 관리	120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 운영비	556,544	13,000		'05. 8. 11	선포식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으로 전용
	1221 공보 관리	120 경상적 경 비	307-04 민간 이전	502,340		13,000		
혁신도시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1217 혁신분권 추진	120 경상적 경비	301-09 일반 보상금	100,000	25,000		'05. 11. 2	공공기관 입지 선 정 위 원 회 수당의 추가 소요액 발생
	3211 혁신분권 추진	120 경상적 경비	201-01 민간 이전			25,000		

○ 예산이체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 유
	세 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계					676,253	676,253		
직제개편	313F 농업정보 센터운영			755,273	676,253		'05. 4. 13	친환경생명산업 지 원 사 업 소 의 신설로 농업정보 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예산 이체
	313G 친환경생명 산업지원사업			0		676,253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 목		사 업 명	승인일자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사 유
세 항	목						
계				30,000	30,000		
치수방재 사 업	401-01 시 설 비	수해상습지 개선(도)	'04. 12. 16	3,060	3,060	2006년도 일시상환	도비부담 재원부족
	403-01 자치단체보조	수해상습지 개선(시군)	'04. 12. 16	6,940	6,940	"	"
지방도사업	401-01 시 설 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04. 12. 16	3,000	3,000	"	"
		지방도사업 (도시행분)	'04. 12. 16	7,050	7,050	"	"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지방도사업 (시군시행분)	'04. 12. 16	570	570	"	"
종합건설 사업소운영	401-01 시 설 비	지방도사업	'04. 12. 16	6,740	6,740	"	"
종합건설 사업소복부 지소운영	401-01 시 설 비	지방도사업	'04. 12. 16	2,640	2,640	"	"

200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보고서

I.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I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7월 5일, 경상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6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년 10월 17일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정호식
- 나.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다. 주요골자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결산
 -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IV.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8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2조 2,718억 7천1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2조 2,749억 6천6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이 전체 91.6%인 2조 834억원
 - 자체수입이 전체 8.4%인 1,915억 6천6백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2조 844억 2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 지출되었음.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2,271,871	2,274,966	2,084,428	190,538	○ 순세계잉여금 : 43,730 ○ 이 월 금 : 146,808 • 명시이월 - 83,527 • 사고이월 - 63,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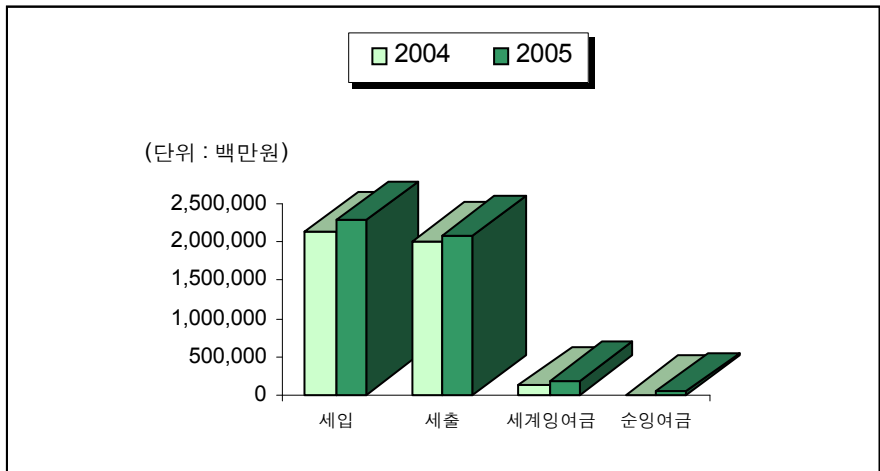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05억 3천8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468억 8백만원을 제외하고

437억 3천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04년도 순잉여금 75억 1천5백만원 대비 481%인 362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함.

<세계잉여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세계잉여금 (C=A-B)	이월액 (D)	순잉여금 (C-D)	2004년도 순잉여금
계	2,274,966	2,084,428	190,538	146,808	43,730	7,515



<그림 1> 2005년도 세계잉여금 및 순잉여금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2조 2,718억 7천1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조 2,909억 7천8백만원이며, 이중 2조 2,749억

6천6백만원은 수납(99.3%)되었고, 158억 4천4백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1억 6천8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158억 4천4백만원은

- 입학금 및 수업료 9백만원
- 잡수입 158억 3천5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의 자·퇴학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은 지방채 미발행 및 채무자사망(거소불명) 발생한 것
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1억 6천8백만원은

- 재산수입 1억 7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백만원
- 잡수입 등 5천5백만원

재산수입은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 미납분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력부족에 기인한것이고,
잡수입은 변상금 등 기타수입 미수납금인 것으로 판단됨.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①	징결 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 납 결손 ④	미수 납액 ⑤	수납율 ③/②
	계	2,271,871	2,290,978	2,274,966	15,844	168	99.3
의 존 수 입	소 계	2,065,826	2,083,400	2,083,400	-	-	100.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1,877,087	1,890,193	1,890,193	-	-	100.0
	국 고 지 원 금	9,176	8,426	8,426	-	-	100.0
	법 정 전 입 금	174,745	179,894	179,894	-	-	100.0
	비 법 정 전 입 금	2,155	2,175	2,175	-	-	100.0
	주 민(기관 등) 부 담 금	2,503	2,552	2,552	-	-	100.0
	기 타 지 원 금	160	160	160	-	-	100.0
자 체 수 입	소 계	206,045	207,578	191,566	15,844	168	99.2
	재 산 수 입	13,568	15,254	15,147	-	107	99.2
	입 학 금 및 수 업 료	27,962	28,315	28,300	9	6	99.9
	사 용 료 및 수 수 료	215	185	185	-	-	100.0
	잡 수 입	24,498	25,399	9,509	15,835	55	37.4
	이 월 금	120,852	120,852	120,852	-	-	100.0
	지 방 채	18,950	17,573	17,573	-	-	100.0

□□ 세입결산내역을 자원별로 보면

의존수입은 2조 83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91.6%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901억 9천3백만원
- 국 고 지 원 금 84억 2천6백만원
- 법 정 전 입 금 1,798억 9천4백만원
- 비 법 정 전 입 금 21억 7천5백만원
-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 등 27억 1천2백만원

자체수입은 1,915억 6천6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4%임.

- 재 산 수 입 151억 4천7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283억원
-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8천5백만원
- 잡 수 입 95억 9백만원
- 이 월 금 1,208억 5천2백만원
- 지 방 교 육 채 175억 7천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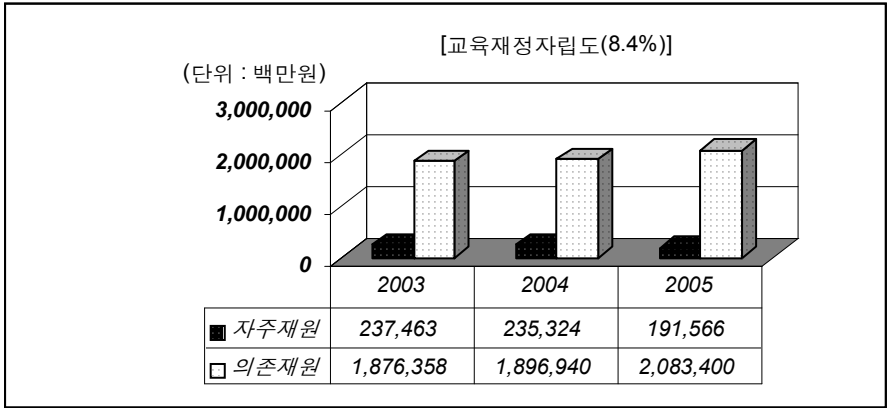
<세입예산 자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의 존 수 입				
소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수입 등
2,083,400	1,890,193	8,426	182,069	2,712

(단위 : 백만원)

자 체 수 입						
소 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191,566	15,147	28,300	185	9,509	120,852	17,573



<그림 2> 교육특별회계 자원내역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2조 2,718억 7천1백만원으로서

예산액 2조 1,585억 3천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3억 3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2조 844억 2천 8백만원은 지출(91.7%)하였고, 1,468억 8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6.5%)하였으며, 406억 3천5백만원은 불용(1.8%)처리 하였음.

<세출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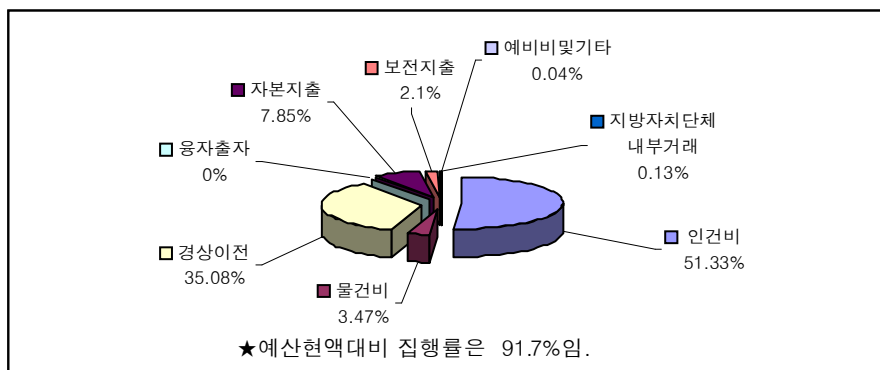
예 산 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불용액)
2,158,535	113,336	2,271,871	2,084,428	146,808	40,635

2005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51.3%), 물건비(3.5%), 경상이전비(35.1%) 등 경상지출이 전체지출의 89.9%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05년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지출대비 구성비
합 계	2,271,871	2,084,428	91.7	100
1. 인건비	1,085,184	1,069,898	98.6	51.3
2. 물건비	75,745	72,417	95.6	3.5
3. 경상이전	747,510	731,210	97.8	35.1
4. 자본지출	315,617	163,616	51.8	7.9
5. 융자·출자	0	0	0	0
6. 보전지출	43,751	43,751	100	2.1
7. 자치단체내부거래	2,713	2,713	100	0.1
8. 예비비 및 기타	1,351	823	60.9	0.0



<그림 3> 2005년도 성질별 세출현황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152억 8천6백만원
○ 물 건 비	28억 6천2백만원
○ 경 상 이 전	30억 3천5백만원
○ 자 본 지 출 경 비	189억 2천4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5억 2천8백만원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82억 1천7백만원
○ 정원 및 호봉미달 운영	3백만원
○ 예 산 절 감	7억 7천2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74억 3천7백만원
○ 집 행 잔 액	242억 6백만원

<불용액 내역(성질별)>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호봉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271,871	40,635	8,217	3	772	7,437	24,206	1.8
인 건 비	1,085,184	15,286	-	-	-	129	15,157	1.4
물 건 비	75,745	2,862	222	-	680	354	1,606	3.8
경상이전	747,510	3,035	1,036	3	1	677	1,318	0.4
자본지출경비	315,617	18,924	6,959		91	5,755	6,119	6.0
융자·출자금	-	-	-	-	-	-	-	0.0
보전지출	43,751	-	-	-	-	-	-	0.0
내부거래	2,713	-	-	-	-	-	-	0.0
예비비 및 기타	1,351	528	-	-	-	522	6	39.04

<관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관 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⑥/③
합 계	2,158,535	113,336	2,271,871	2,084,428	146,808	40,635	1.8
유 치 원	24,442	1,553	25,995	24,488	1,419	88	0.3
초 등 학 교	245,762	41,961	287,723	216,386	64,989	6,348	2.2
중 학 교	240,277	30,441	270,718	211,023	50,843	8,852	3.3
고 등 학 교	276,967	26,993	303,960	285,123	15,308	3,529	1.2
특 수 학 교	22,996	2,732	25,728	24,083	1,559	86	0.3
평 생 교 육	8,474	1,012	9,486	6,983	2,223	280	3.0
급 여 관 리	1,220,703	-	1,220,703	1,204,561	-	16,142	1.3
교육위원회	541	-	541	510	-	31	5.9
교 육 청	31,913	5,166	37,079	33,381	1,294	2,404	6.5
지역교육청	17,997	791	18,788	15,159	2,973	656	3.5
육지원기관	18,345	3,087	21,432	13,615	6,200	1,617	7.5
지방채상환	48,467	-	48,467	48,392	-	75	0.2
지 출 금	41	689	730	724	-	6	0.8
예 비 비	1,610	-1,089	521	-	-	521	100

라. 예비비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억 8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천3백만원임.
- 그 내역은 태풍 피해시설 복구비로 3억 3천1백만원, 명예 퇴직수당 반환금으로 6억 8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태풍피해 물품 구입비 외 7건	1,089	1,013	3	73	제14호 태풍(나비) 피해 재해 복구비 및 퇴직수당 반환금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

2005회계연도 예산이체액은 652억 1천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산 이체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사 업 명	전 용 액		전용일자	비고
		증	감		
계		65,211	65,211	2005. 7. 27	
총 무 과	기구 변경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	65,211		"	
재무관리과	기구 변경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		65,211	"	

사. 예산 전용

당해연도 전용액은 11억 5천9백만원으로서 기구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교육혁신 박람회 홍보전시관 이설로 인한 예산 부족분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으로 지출코자 전용한 것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과 목	사 업 명	전 용 액		비고
			증	감	
계			1,159	1,159	
기 획 예 산 과	보 수(101)	인건비 부족분	1,090		
기 획 예 산 과	보 수(101)	"		1,090	
혁신복지담당관실	관서운영비(201)	교육혁신 박람회 홍보전시관 이전 설치비	44		
혁신복지담당관실	용역비(206)	"		44	
총 무 과	보 수(101)	지역교육청의 명예퇴직수당부족분	25		
총 무 과	보 수(101)	"		25	

바. 계 속 비 : 해당없음

사.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2,718억 7천1백만원 중 1,468억 8백만원 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5%임.

- 명시이월 142건에 835억 2천7백만원(56.9%)
- 사고이월 105건에 632억 8천1백만원(43.1%)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율(%)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2,271,871	146,808	-	83,527	63,281	6.5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871억 8천5백만원보다 25억 1천6백만원이 증가된 897억 1백만원으로서
- 국고 대여장학금 28억 5천 4백만원, 재산임대료수입 4천9백만원 그리고 잡수입 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료 8천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억 1천만원은 소멸하였고, 수업료는 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채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비고
		증	감		
계	87,185	14,090	11,574	89,701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전세권	81		-	81	
전교조경북지부사무실 전세권	80		80	-	
국 고 대 여 장 학 금	86,597	13,972	11,118	89,451	
기 초 자 치 단 체 전 입 금	310		310	-	
재 산 임 대 료	102	107	58	151	
수 업 료	12	6	8	10	
잡 수 입	3	5	-	8	

2) 채 무

채무액은 명퇴재원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따라 전년도말 채무액 1,315억 7천9백만원보다 437억 5천1백만원이 감소된 878억 2천 8백만원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 해 연도말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환· 소멸액			
차입금	131,579	△43,751	-	△43,751	87,828	-	명퇴재원 원금 및 이자상환

나. 재 산

1) 공유 재산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3,058억 6천7백만원이 증가된 3조 3,242억 3천2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2,987억 6천1백만원이 증가된 3조 2,576억 9천 5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71억 6백만원이 증가된 665억 3천 7백만원임.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3,018,365	305,867	658,160	352,293	3,324,232
행정재산	2,958,934	298,761	619,142	320,382	3,257,695
잡종재산	59,431	7,106	39,017	31,911	66,537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91억 6천1백만원이 증가된 1,935억원으로서 전기·기계 등 10종, 40,378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물 품 현 황>

(단위 : 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기계 등 10 종	38,338	184,339	3,853	19,806	1,813	10,645	40,378	193,500

V.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총괄부문

- 200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 주요시책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실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혁신을 통한 현장지원 행정구현』,이라는 목표아래 ① 교육서비스 향상, ② 교권확립과 학생 존중교육풍도 조성, ③ 기초기본 교육 충실, ④ 교수학습 방법 개선, ⑤ 소질과 특기의 신장, ⑥ 정보 활용 능력강화, ⑦ 단위 학교 책임경영의 정착 등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실천 사항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사료되지만 교육재정의 중앙정부재정 의존도가 심화 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의 현대화 추진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형편임.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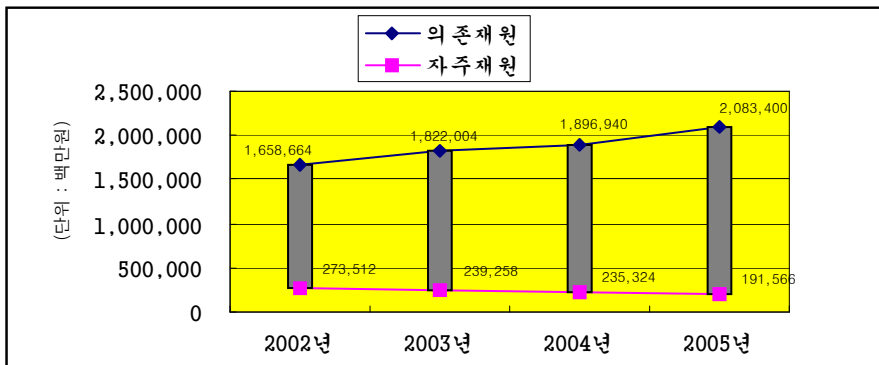
구 분	예산현액 ①	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정수율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5년	2,271,871	2,290,979	2,274,966	99.3	15,845	169
2004년	2,191,179	2,148,600	2,132,265	99.2	78	16,25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의존수입은(전체 예산의 91.6%) 100%로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및 입학금, 수업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전체 예산의 8.4%) 92% 수납됨으로써 전체 수납율은 99.3%로서 전년도 대비 0.1% 향상되었음.
- 다만, 잡수입에 있어 계획 대비 수납율이 37%로 저조한 것은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족하려고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전년도 이월잔액으로 충당함으로써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결손임.

<연도별 세입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분	합 계	의존 수입	비 율	자체 수입	비 율
2002	1,932,176	1,658,664	85.8	273,512	14.2
2003	2,121,262	1,822,004	88.7	239,258	11.3
2004	2,132,264	1,896,940	88.9	235,324	11.1
2005	2,274,966	2,083,400	91.6	191,566	8.4



<그림 4> 세입재원 추세도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면

- 예산현액 2조 2,718억 7천1백만원 중 91.7%를 지출하였고, 미지출액은 1,874억 4천3백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1,468억 8백만원과 불용액 406억 3천5백만원임.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05년	2,271,871	2,084,428	91.7	146,808	6.5	40,635	1.80
2004년	2,191,179	2,011,414	91.8	113,336	5.2	66,429	3.03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5년도 이월액은 1,468억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중 6.5%를 차지하여 지난해 5.2%보다 1.3% 증가함.

이월액이 많은 것은 학교환경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로서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은 당연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이월액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예산 현액	이 월 액			비 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05	2,271,871	146,806	83,527	63,281	6.5
2004	2,191,179	113,336	60,056	53,280	5.2
2003	2,121,263	138,562	75,385	63,177	6.5
2002	1,931,516	152,280	47,398	104,882	7.9

□□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 전년도 사고이월 중 집행 잔액 4억 7천8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 중 부득이하게 정산과정을 통해 잔액이 발생될 수 도 있으나, 경구고 체육관 증축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사업 계획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판단됨으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사고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고이월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구성비
계	53,280	52,802	0	478	0.9
체육관 증축(경구고)	300	0	0	300	100
약목고 신축	7,784	7,754	0	30	0.4
오대동동부초 신축	7,582	7,535	0	47	0.6
기 타	37,614	37,513	0	101	0.3

□□ 예산전용에 대하여

- 예산은 일정한 기간의 정부 재정활동(재정수지)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서로서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추진 중 부족한 금액이 소액이거나 중요성이 적을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전용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교육혁신 박람회 예산 집행잔액 4천4백만원을 관서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과목전용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관서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등을 집행하는 과목이지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대책이 요망됨.

<예산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목	예 산 액	전 용 액	
			증	감
경북교육홍보관이 시설재전시	관서운영비(201)	156	44	
혁신박람회	용역비(206)	601		44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406억 3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 664억 2천9백만원과 비교하여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 있어 불용률이 높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예산 집행의 혼란을 야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

<불용액 발생이 많은 기관>

(단위 : 백만원, %)

기 관 별	예산 현액	집 행 액	익년이월액	불 용 액	불 용 율
경주교육청	68,023	34,900	27,996	5,126	7.5
고령교육청	15,407	7,174	1,110	7,222	46.6
울릉교육청	5,208	3,345	1,322	540	10.4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보수 또는 토지매입 같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투자토록 하고 투융자심사시 현지 확인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 되고 토지매수 보상협의 지연으로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계획 수립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 채널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불용율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정원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2005	2,271,871	40,636	1.8	8,217			7,436	24,206
2004	2,291,179	66,429	2.9	1,607		659	38,867	25,296
2003	2,121,263	52,007	2.5	2,428			26,101	23,478
2002	1,931,516	32,727	1.7	2,844	2	927	13,630	15,324

□□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례

-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차지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도 일부 과목은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 예산을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불필요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은 추경예산 작업시 반드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불용율이 높은 과목 조서(50% 이상) : 별첨

□□ 시설비 집행의 부적정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8~9페이지를 참조하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예산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도 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및 식당보수 외 18건은 예산편성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또는 부기항목이 없는데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서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안동교육청 진입로 포장공사(풍북초)외 17건은 미확보된 사업을 긴급 현안해결을 위하여 임의로 집행하거나, 기확보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경시한데 대하여 부적정한 사례로서, 시설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사유서와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교육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별 첨]

불용율이 높은 과목 조서
(경상북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불용율이 높은 과목 조서(50%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페이지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본	206	업 무 추 진 비	3,500	170		3,330	95.1
	207	관 서 운 영 비	3,000	500		2,500	83.3
	217	토 지 매 입 비	160,000		10,000	150,000	93.8
	231	여 비	1,497			1,497	100.0
	238	토 지 매 입 비	147,000	32,984	344,181	114,016	77.6
	243	시 설 비	△2,000			△2,000	100.0
	248	비 정 규 직 보 수	11,419			11,419	100.0
	249	민 간 경 상 이 전	48,765	1,341		47,424	97.3
	250	비 정 규 직 보 수	118,505	59,286		59,219	50.0
	250	비 정 규 직 보 수	35,986	582		35,404	98.4
청	251	민 간 경 상 이 전	40,426	18,653		21,773	53.9
	251	비 정 규 직 보 수	11,419			11,419	100.0
	252	비 정 규 직 보 수	24,569	2,935		21,634	88.1
	253	비 정 규 직 보 수	24,569	2,788		21,781	88.7
소	253	민 간 경 상 이 전	36,226	8,075		28,151	77.7
	256	민 간 경 상 이 전	3,500			3,500	100.0
	258	관 서 운 영 비	14,730	4,207		10,523	71.4
	258	업 무 추 진 비	6,244	1,132		5,113	81.9
관	259	보 상 료	68,690	32,460		36,230	52.7
	263	보 상 료	480	160		320	66.7
	276	학 교 회 계 전 출 금	39,201	19,317		19,884	50.7
	291	여 비	1,497			1,497	100.0
	297	토 지 매 입 비	147,000	32,984		114,016	77.6
	307	비 정 규 직 보 수	11,419			11,419	100.0
	307	민 간 경 상 이 전	48,765	1,341		47,424	97.3
	308	비 정 규 직 보 수	35,986	582		35,404	98.4
	309	비 정 규 직 보 수	11,419			11,419	100.0

구 분	페이지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본 청 소 관	311	비정규직보수	24,569	2,788		21,781	88.7
	311	민간경상이전	36,226	8,075		28,151	77.7
	315	민간경상이전	3,500			3,500	100.0
	316	관 서 운 영 비	14,730	4,207		10,523	71.4
	316	업 무 추 진 비	6,244	1,132		5,113	81.9
경 주 교육청	391	토 지 매 입 비	4,000,000	608,260		3,391,740	84.8
	392	시 설 비	2,110,000	1,010,000		1,100,000	52.1
	392	토 지 매 입 비	160,000		10,000	150,000	93.8
	392	관 서 운 영 비	3,000	300		2,700	90.0
김 천 교육청	409	관 서 운 영 비	2,500			2,500	100.0
	410	학교회계전출금	6,320	2,000		4,320	68.4
	415	관 서 운 영 비	1,000	320		680	68.0
안 동 교육청	429	민간경상이전	1,498	600		898	59.9
	430	민간경상이전	1,000	500		500	50.0
	436	관 서 운 영 비	5,900	900		5,000	84.7
상 주 교육청	519	학교회계전출금	160			160	100.0
	529	업 무 추 진 비	100			100	100.0
경산교육청	567	관 서 운 영 비	1,000			1,000	100.0
군위교육청	577	학교회계전출금	2,200	1,000		1,200	54.5
영양교육청	644	관 서 운 영 비	476			476	100.0
고령교육청	710	시 설 비	7,351,645	68,730	594,000	6,688,915	91.0
칠곡교육청	741	업 무 추 진 비	3,500	170		3,330	95.1
울 진 교육청	811	관 서 운 영 비	2,100	948		1,152	54.8
	811	사 학 지 원 비	200			200	100.0
	811	사 학 지 원 비	300	150		150	50.0
울 립 교육청	824	여 비	1,200	365		835	69.6
	825	관 서 운 영 비	500			500	100.0
	834	업 무 추 진 비	96			96	100.0
	835	보 상 금	800			800	100.0

결의안 : 1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0
----------	----

제안년월일 : 2006. 10. 1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이 규정됨으로써,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전체 7~9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 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시하(李時夏)	행정보건복지 (한, 문경 1)	위원장
2	이상용(李相龍)	기획경제 (한, 영양 2)	간 사
3	김종천(金鍾天)	통상문화 (한, 영주 1)	위 원
4	박순범(朴淳範)	행정보건복지 (한, 칠곡 2)	"
5	손덕임(孫德任)	기획경제 (비례, 열린우리)	"
6	장병익(蔣炳益)	건설소방 (한, 군위 2)	"
7	장세헌(張世憲)	교육환경 (한, 포항 1)	"
8	전찬걸(田燦傑)	교육환경 (무, 울진 1)	"
9	조동만(趙東晩)	농수산 (한, 영양 1)	"

 승인안 : 1건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6. 11. 14(화)~11. 23(목) : 10일간

3. 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대상

- 감사대상 : 60개 기관
 - 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1
 - 나. 경상북도 : 42(본청 13, 직속기관 및 사업소 29)
 - 다. 경상북도 교육청 : 13[본청(직속기관 포함) 1, 시군 교육청 12]
 - 라. 지방공기업 : 4(의료원 3, 개발공사 1)
- 현지확인 대상 : 9개소
 - 가. 통상문화분야 : 4개소
 - 나. 건설소방분야 : 5개소

4.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지확인
	계	본 청	소 속 기 관	
계	60	14	46	9
의회운영위원회	1		○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6	○ 공보관실 ○ 새경북기획단 ○ 기획조정본부 ○ 경제과학진흥본부	○ 공무원교육원 ○ 경북개발공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8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 행정지원국	○ 경도대학 ○ 자연환경연수원 ○ 포항의료원 ○ 김천의료원 ○ 안동의료원	
교육환경위원회	18	○ 환경해양산림국 ○ 도 교육청 (직속기관포함)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포함)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소득개발원 ○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시군교육청(12개소)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소 속 기 관	
농수산위원회	5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하부조직 포함) ○ 축산기술연구소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통상문화위원회	2	○ 투자통상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 경북통상(주) ○ 경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국학진흥원
건설소방위원회	20	○ 건설도시방재국 ○ 소방본부	○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포함) ○ 소방학교 ○ 시군 소방서(16개소)	○ 의성 청로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 효령~신녕간 도로 재포장 공사 ○ 안강~청령간 4차로 확·포장공사 ○ 청령~현곡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청도~경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

5. 감사실시계획

(1) 의회운영위원회

일 정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
11. 23(목)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의실	○ 감사위원장 김응규 ○ 감사위원 박순범, 김만용 김수용, 김영만 박기진, 박병훈 박순열, 박진현 손진영, 이상태 이종원, 장두옥 최윤희, 한혜련	○ 전문위원 주근호 ○ 지방행정주사 김홍석 ○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아 ○ 속기사

(2) 기획경제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
11. 14(화)	○ 기획조정본부	기획경제위원회 의 실	○ 감사위원장 이현준 ○ 감사위원 박진현, 김수용 나규택, 손덕임 안순덕, 이상용 이상태, 정경구	○ 전문위원 김재석 ○ 지방행정주사 장상열 ○ 지방행정주사보 유명근 ○ 속기사
11. 15(수)	○ 경제과학진흥본부	"		
11. 16(목)	○ 공보관실 ○ 새경북기획단	"		
11. 20(월)	○ 경상북도개발공사	수감기관		
11. 21(화)	○ 공무원교육원	"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
11. 14(화)	○ 행정지원국	행정보건 복지위 회의실	○ 감사위원장 이우경 ○ 감사위원 손진영, 권영만 김숙향, 김응규 박순범, 윤영식 윤창욱, 이시하	○ 전문위원 구홍조 ○ 지방행정주사 이용구 ○ 지방행정주사보 구본석 ○ 속기사
11. 15(수)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		
11. 16(목)	○ 포항의료원	수감기관		
11. 17(금)	○ 안동의료원	"		
11. 20(월)	○ 김천의료원	"		
11. 21(화)	○ 자연환경연수원	"		
11. 22(수)	○ 독립경도대학	"		

(4) 교육환경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
11. 14(화)	○ 환경해양산림수산국	교육환경위 회 의 실	○ 감사위원장 장대진 ○ 감사위원 박순열, 김만용 김영기, 백천봉 송필각, 장세현 전찬걸, 채옥주	○ 전문위원 황용대 ○ 지방행정주사 정중태 ○ 지방행정주사보 권기영 ○ 속기사
11. 15(수)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소득개발원 ○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		
11. 17(금)	○ 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		
11. 20(월)	○ 포항·영덕·울진· 울릉 교육청	포항교육청		
11. 21(화)	○ 영주·청송·영양· 봉화 교육청	청송교육청		
11. 22(수)	○ 군위·고령·성주· 칠곡 교육청	군위교육청		
11. 23(목)	○ 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환경위 회 의 실		

(5) 농수산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만 편성	사무보조
11. 14(화)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수산위 회 의 실	○ 감사위원장 방유봉 ○ 감사위원 이종원, 김동인 김영만, 남종식 박노옥, 박병훈 이용석, 조동만	○ 전문위원 박만식 ○ 지방행정주사 이연우 ○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균 ○ 속기사
11. 15(수)	○농산물원종장 ○성주과채류시험장	수감기관		
11. 16(목)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잠사곤충사업소	"		
11. 17(금)	○축산기술연구소	"		
11. 20(월)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11. 21(화)	○농수산국	농수산위 회 의 실		
11. 22(수)	○농업기술원	"		

(6) 통상문화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 무 보 조
11. 14(화)	○ 투자통상본부 ○ 경북통상	통상문화위원회 의 실 현지확인	○ 감사위원장 이상효 ○ 감사위원 최윤희, 김종천 방대선, 백영학 이재철, 장경식 정무웅, 한혜련	○ 전문위원 송용배 ○ 지방행정주사 송대성 ○ 지방행정주사보 안경호 ○ 속기사
11. 15(수)	○ 문화체육관광국	통상문화위원회 의 실		
11. 16(목)	○ 경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지확인 "		
11. 17(금)	○ 한국국학진흥원	"		

(7) 건설소방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조
11. 14(화)	○ 안동소방서 ○ 청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성 금성)	수감기관 현지확인	○ 감사위원장 황상조 ○ 감사위원 박기진, 고우현 김기홍, 김영택 박영화, 장길화 장두욱, 장병익	○ 전문위원 김이찬 ○ 지방행정주사 김동배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록 ○ 속기사
11. 15(수)	○ 칠곡소방서 ○ 효령~신령간 도로 재포장 공사 (군위 효령)	수감기관 현지확인		
11. 16(목)	○ 포항북부소방서	수감기관		
	○ 안강~청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안강) ○ 청령~현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곡)	현지확인 현지확인		
11. 17(금)	○ 경산소방서 ○ 청도~경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진량)	수감기관 현지확인		
11. 20(월)	○ 종합건설사업소	수감기관		
11. 21(화)	○ 소방본부	건설소방위 회 의 실		
11. 22(수)	○ 건설도시방재국	”		

의정활동보고서

(제210회 임시회)



2006. 11 인쇄 / 2006. 1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